

제400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16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9)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0)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6)
4. 경주지진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1)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9)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4)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6)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5)
10. 국정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6)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1)
1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6)
1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5)
1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3)
1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8)
1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6)
1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9)
1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4)
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9)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0)
2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9)
2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8)
2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2)
2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4)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3)
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7)

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0)
2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7)
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9)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8)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2)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9)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1)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3)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9)
3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841)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311)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359)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066)
4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1)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4)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9)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3)
4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3)
4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529)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250)
4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200)
5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538)
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0)
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3)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8)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3)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8)
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2)
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1)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8)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8)
6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1)
6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376)

6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1)
6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9)
6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
6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3)
6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1)
6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0)
69.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3)
7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1)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7)
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3)
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6)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5)
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7)
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3)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8)
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5)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6)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8)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4)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5)
8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2)
8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1)
8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
8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4)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6)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6)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0)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7)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3)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1)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1)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5)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5)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5)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9)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8)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5)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1)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7)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3)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4)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1)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9)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9)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5)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6)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8)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7)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9)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2)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6)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3)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2)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0)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5)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3)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0)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6)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9)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3)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4)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4)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1)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6)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1)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5)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8)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2)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4)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0)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8)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4)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1)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5)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0)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3)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5)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5)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1)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9)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1)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2)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2)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8)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2)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0)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6)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6)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8)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3)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3)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7)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0)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8)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9)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4)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6)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0)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6)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0)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4)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7)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3)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9)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7)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0)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3)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9)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7)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1)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4)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0)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8)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0)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9)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3)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4)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9)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9)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2)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7)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0)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1)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6)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9)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3)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7)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8)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2)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2)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1)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0)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7)
20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4)
2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8)
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5)
20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6)
20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8)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2)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2)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9)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5)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0)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4)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2)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4)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9)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7)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1)
2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3)
2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9)
2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5)
2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0)
2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0)
2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0)
2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5)
2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6)
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5)
2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9)
2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2)
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8)
2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1)
2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6)
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3)
2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0)

2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5)
235.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3)
2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1)
23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9)
23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7)
23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
2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4)
2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7)
2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0)
2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6)
24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0)
24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0)
2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2)
24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9)
24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9)
24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250. 경찰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0)
25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2)
25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3)
25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0)
25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5)
2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4)
25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7)
25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1)
2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6)
25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3)
2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4)
2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4)
2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7)
2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6)
2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8)
2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1)
2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3)
2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4)
2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5)
2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6)
2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0)
2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6)
2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2)
2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9)

2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5)
275.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27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8)
277.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1)
2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6)
2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5)
2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0)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6)
2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3)
28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2)
2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4)
2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9)
28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8)
28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7)
28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972)
2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29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7)
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7)
292.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배인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89)
293.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294.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9) 16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0) ... 16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6) ... 16
4. 경주지진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1) 16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9) 16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4) 16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8) ... 16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6) ... 16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5) 16
10. 국정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6) 16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1) ... 16
1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6) 16
1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5) 16
1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3) 16
1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8) 16

1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6)	16
1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9)	16
1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4)	16
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9) ..	16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0) ..	16
2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9)	16
2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8)	16
2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2)	16
2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4)	16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3)	17
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7)	17
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0)	17
2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7)	17
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9)	17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8)	17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2)	17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9)	17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1)	17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3)	17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9)	17
3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1)	17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1)	17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9)	17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6)	17
4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17
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1)	17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4)	17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9)	17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3)	17
4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3)	17
4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17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9)	17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0)	17

4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0)	17
5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8)	17
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0)	17
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3)	17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8)	17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3)	17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8)	17
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2)	17
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1)	17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8)	17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8)	17
6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1)	17
6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6)	17
6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1)	17
6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9)	17
6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18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	18
6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3)	18
6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1)	18
6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0)	18
69.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3)	18
7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18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1)	18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7)	18
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3)	18
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6)	18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5)	18
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7)	18
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3)	18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8)	18
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5)	18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6)	18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8)	18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4)	18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5)	18
8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2)	18
8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1)	18

8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 ……	18
8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4) ……	18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6) ……	18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6) ……	18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0) ……	18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7) ……	18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3) ……	18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1) ……	18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1) ……	18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5) ……	18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5) ……	18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5) ……	18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9) ……	18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8) ……	18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5) ……	18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1) ……	18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7) ……	18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3) ……	18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4) ……	18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1) ……	18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9) ……	19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9) ……	19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5) ……	19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6) ……	19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8) ……	19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7) ……	19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9) ……	19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	19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2) ……	19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6) ……	19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3) ……	19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2) ……	19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0) ……	19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5) ……	19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3) ……	19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	19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0) ……	19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16) ……	19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9) ……	19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3) ……	19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4) ……	19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4) ……	19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1) ……	19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6) ……	19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1)	19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5)	19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8)	19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2)	19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4)	19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0)	19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8)	19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4)	19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1)	19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5)	19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0)	19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3)	19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5)	19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5)	19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1)	19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9)	19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1)	19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2)	19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2)	19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8)	19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2)	19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0)	20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6)	20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6)	20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8)	20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3)	20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3)	20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7)	20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0)	20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8)	20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9)	20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4)	20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6)	20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0)	20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6)	20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0)	20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4)	20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7)	20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3)	20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9)	20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7)	20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0)	20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3)	20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20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9)	20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7)	20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1)	20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4)	20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0)	20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8)	20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0)	20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9)	20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3)	20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4)	20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9)	20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9)	20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2)	20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7)	20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0)	20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1)	20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6)	20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9)	20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3)	20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7)	20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8)	20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2)	20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2)	21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1)	21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0)	21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	21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	21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7)	21
20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4)	21
2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8)	21
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5)	21
20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6)	21
20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8)	21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2)	21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2)	21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9)	21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5)	21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0)	21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4)	21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2)	21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4)	21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9)	21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7)	21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61)	21

2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3)	21
2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9)	21
2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5)	21
2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0)	21
2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0)	21
2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0)	21
2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5)	21
2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6)	21
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5)	21
2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9)	21
2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2)	21
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8)	21
2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1)	21
2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6)	21
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3)	21
2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0) ..	21
2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5) ..	21
235.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3)	21
2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1)	21
23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9)	21
23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7)	21
23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	21
2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4)	21
2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7)	22
2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0)	22
2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6)	22
24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0)	22
24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0)	22
2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2)	22
24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9)	22
24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9)	22
24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22
250. 경찰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0) ..	22
25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2)	22
25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3)	22
25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0)	22
25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5)	22
2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4)	22
25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837)	22
25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481)	22
2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296)	22

25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3)	22
2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4)	22
2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4)	22
2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7)	22
2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6)	22
2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8)	22
2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1)	22
2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3)	22
2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4)	22
2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5)	22
2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6)	22
2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0)	22
2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6)	22
2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2)	22
2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9)	22
2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5)	22
275.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22
27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8) ..	22
277.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1)	22
2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6)	22
2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5)	22
2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0)	22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6)	22
2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3)	22
28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2)	23
2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4)	23
2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9)	23
28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8)	23
28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7)	23
28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972)	23
2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23
29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7)	23
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7)	23
292.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배인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89) ..	23
293.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23
294. 현안질의	31

(14시01분 개의)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고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현안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먼저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에 회부한 후에 이어서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를 상정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과 기관장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비롯하여 KBS, MBC, SBS 등 공중파와 YTN,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등 종합편성채널에서 생중계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기관장님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이재익**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83항까지 총 8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의 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태원 참사 사고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 정기회에서 꼭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이상 8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위원회 의결로써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9)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0)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6)

4.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1)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9)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4)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6)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5)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6)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1)
1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6)
1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5)
1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3)
1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8)
1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6)
1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9)
1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4)
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9)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0)
2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9)
2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8)
2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2)
2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4)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3)
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7)
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0)
2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7)
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9)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8)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2)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9)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1)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3)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9)
3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1)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1)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9)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6)
4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1)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4)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9)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3)
4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3)
4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9)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0)
4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0)
5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8)
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0)
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3)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8)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3)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8)
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2)
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1)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8)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8)
6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1)
6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6)
6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1)
6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9)
6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
6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3)
6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1)
6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0)
69.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3)
7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1)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7)
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3)
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6)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5)
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7)
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3)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8)
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5)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6)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8)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4)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5)
8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2)
8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1)
8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
8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4)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6)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6)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0)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7)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3)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1)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1)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5)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5)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5)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9)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8)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5)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1)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7)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3)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4)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1)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89)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909)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915)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976)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18)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47)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59)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69)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152)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166)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203)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262)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300)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315)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393)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447)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590)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16)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79)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93)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714)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744)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4761)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16)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51)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65)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88)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92)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04)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60)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78)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94)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11)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35)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40)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53)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75)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95)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21)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69)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91)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312)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342)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18)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52)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70)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76)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86)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38)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63)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13)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67)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80)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98)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99)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864)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896)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20)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66)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000)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054)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067)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03)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09)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17)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70)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03)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6226)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49)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77)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81)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84)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90)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38)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70)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89)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13)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34)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49)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29)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42)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47)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610)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681)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06)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09)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43)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37)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18)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032)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232)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431)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530)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584)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04)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17)
20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914)
2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488)
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45)
20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36)
20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98)
2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802)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842)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49)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585)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80)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84)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52)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84)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09)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37)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61)
2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863)
2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299)
2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745)
2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40)
2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50)
2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260)
2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65)
2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66)
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55)
2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309)
2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22)
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48)
2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81)
2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26)
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533)
2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40)
2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95)
235.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923)
2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41)
23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669)
23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57)
23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572)
2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4)
2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7)
2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0)
2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6)
24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0)
24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0)
2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2)
24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9)
24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9)
24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250.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0)
25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2)
25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3)
25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0)
25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5)
2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4)
25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7)
25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1)
2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6)
25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3)
2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4)
2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4)
2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7)
2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6)
2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8)
2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1)
2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3)
2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4)
2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5)
2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6)
2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0)
2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6)
2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2)
2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9)
2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5)
275.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27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8)
277.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1)
2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6)
2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5)
2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0)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6)
2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3)

28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2)
2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4)
2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9)
28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818)
28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197)
28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972)
2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29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7)
2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7)
292.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
(배인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89)

(14시04분)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92항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9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두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91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 각각 소관별로 회부하겠습니다.

김교홍 소위원장님과 이만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회부된 법률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김교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세요, 법률안 상정까지 다 됐으니까.

293.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채익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292항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은 청원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상임위원회의 관례대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2항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은 2022년 10월 7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의 연계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김교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세요.

○위원장 이채익 예, 김교홍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김교홍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항상 말씀이 ‘위원장과 여야 간에 간사끼리 합의하였기에’ 이런 표현을 오늘도 몇 번 쓰셨는데 오늘 16일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던 예산 의결일입니다. 하지만 행안위원장님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 예결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소위 위원들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예산…… 끝에 행정안전부와 소관기관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적 요구와 또 저희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각 시·도지사가 얘기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예결소위에서 7050억 원을 살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했던 겁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경찰 장악 우려가 가장 큰 경찰국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소위에 국민의힘 측 위원님들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모든 예산은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반대한다며 예산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어제까지도 이만희 간사님 또 행안위원장님을 만나서 누차 협상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안건만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한다면 향후 행정안전위원회가 과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우려가 큼니다.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소위 결과를 존중해서 2023년도 행안부 및 소관기관의 예산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빨리 상정을 해서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꼭 우리 위원장께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먼저 이만희 간사님.

○이만희 위원 김교홍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강조를 하였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행정안전위 2023

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가지고는 합의라든지 협치라든지 또 국회의, 소위의 기본적인 여러 전통들이 정말 깡그리 무시된, 어떻게 보면 다수의 힘에 의해서 강행된 예산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 보여 줬던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떠받들어서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만 골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문진석 위원 엔간히 하세요.

○이만희 위원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기승전 이재명입니까?

○이만희 위원 많은…… 다 보고 계신데……

○위원장 이채익 문진석 위원님,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는 일단 들어 보세요.

○문진석 위원 너무해. 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채익 이만희 간사님 발언하세요.

○이만희 위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실 줄 모르네요.

여러분, 경찰국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나,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월급도 주지 말고 일 시키라는 겁니까? 사무실의 기본경비는 그 사무실에서 소용되는 사무용품, 복사용지, 생수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구입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경찰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당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치된 국가의 조직입니다. 그것조차도 반쪽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거 할 때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이 됩니까? 행안부장관한테는 경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경찰국에는 일정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인사 제청권 또 국무회의에 부의할 법령에 대한 심사권 정도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된 그런 경찰국이었습니다. 그 경찰국에 대한 예산을 깡그리 여러분 단독으

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언론에 나온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업추비를 1억 깎았다고 아주 기고만장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성만 위원 말 표현 잘 하세요.

○이만희 위원 국민에게 보여 줄 점, 예산심사가 국민에게 보여 줄 점으로 하는 겁니까?

○이성만 위원 말 표현 잘 하세요.

○이만희 위원 그 업무추진비는 기존 22년에서 이미 10% 이상을 줄여 가지고 그래서 반영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하다는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빨리 정리하세요. 뭘 이렇게 오래 얘기해.

○이만희 위원 또 지역사랑상품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와 또 조정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당장 상정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가 24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야당 간사와 더 열심히 협상을 하고 또 우리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한테도 같은 설득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김철민 예산소위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철민 위원 예산소위를 맡았던 김철민입니다.

저도 재선이지만 몇 번에 걸쳐서 예산소위를 담당해 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이만희 간사님께서 합의, 협치를 깡그리 무시당했다, 다수 힘에 의한 강행처리라는 말씀 하셨는데 어떤 상임위도 우리 행안위 예산소위처럼 협치와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적은 제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야 위원들이 목소리 줄여 가면서 민생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예산소위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예산소위 위원들은 일단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심사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당연히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께서 경찰국 예산 삭감 이유 또 우리 이만희 위원께서 주장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상정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 다시피 지금 행안부에 수많은 산하기관이 있고 수많은 예산안이 있는데 경찰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들을 상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평소에 이채익 위원장께서 행안위원회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부드럽게 이끌고 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런 점 높이 평가했었는데 이번에 전체회의 상정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예산소위상에서 문제 있었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충분히 전체회의 때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길을 마련해 봤는데 상정조차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 이만희 간사께서 말씀드렸 다시피 상정하셔서 가지고 다시금 이 자리에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해 줄 것을 이채익 위원장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 예결소위 참가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철민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예결소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안을 합의하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행안부장관 경비 그 1억 삭감도,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여당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저희 동의를 했습니다. 왜요? 원만하게 합의하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제가 그날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이런 것까지 꼭 깎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한번만 좀 봐 달라, 이제 처음 생기는 기구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삭감 꼭 해야겠다고 했을 때 동의한다고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 거의 다 해 드렸어요. 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경찰국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때 표결처리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는 그때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소위의 기본적인 원칙, 관행을 깬 것이다, 절대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냥 나가고 났을 때 사실은 이 예산안은 하나의 한 몸이에요. 팔다리, 가슴, 위장, 머리 이게 다 별개입니까, 한 사람이죠. 하나가 썩어서 죽어 버렸는데 나머지는 살아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유리한 것은 지금 다 합의하에 처리가 됐으니까 그대로 가자, 그리고 불리한 것은 그때 힘으로 투표로 강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소위에서 표결하는 것은 위원들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강행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똑같이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장의 권한이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합의를 이야기를 하시고 관행을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힘을 이야기하시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은 하나입니다. 그때 분명히 저희가 나갔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나갔을 때, 그러면 몸으로 막았어야지만 그게 확실한 반대의견입니까? 소위 위원이 절대 이걸 안 된다고 일어서서 나간 것 그것보다 더 강한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채익 우리 김웅 위원님 뜻은……

○김웅 위원 저는 이 예산안은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김교홍 위원 발언 받아 주세요.

○이성만 위원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진석 위원 위원장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위원들 얘기도 좀 들어 주세요. 예산안 상정 안 하는 건 위원장 권한이지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것도 위원들의 권한 아닙니까?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님 두 분이 하였고 또 예산소위 위원장도 한 말씀 했고 참여했던 예산위원도 했습니다. 여야 두 분씩, 두 분씩 했습니다. 오늘 사실……

○김교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세요.

○이성만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를 안 올린다는 게.

○정우택 위원 위원장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이성만 위원 심의를 안 올리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김교홍 위원 소위에서 이틀 동안 한 걸 안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성만 위원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회의의 안건으로 안 부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이채익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성만 위원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 아닙니까!

○정우택 위원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위원장 얘기하는데 뭘 자꾸 왜…… 듣고 얘기하시라고요.

○이만희 위원 그만 좀 하세요, 이성만 위원.

○이성만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안 준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을 줘야지.

○정우택 위원 듣고 또 하시면 되잖아. 들어 보고,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들어 보자고요.

○위원장 이채익 자, 여야 위원님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당도 하고 야당도 했습니다. 또 예산소위나 법안소위 다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오랜 관행이 소위에서 예산과 법률안을 표결로, 다수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왜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합니까? 당연히 상정하지요. 그 전제는 여야 합의해서 원만하게 안이

만들어지면 내일이라도 또 오늘이라도 상정하겠습니다. 하니까……

○**김교흥 위원** 그러면 오늘 논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오늘 논의하시지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이채익**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상정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우리가 현안질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성만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교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소위에서 이를 동안 한 걸 묵사발 시키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민주당 한 분 하시고 국민의힘 한 분 하시고, 한 분씩 한 분씩……

이성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성만 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 임무에 맞춰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고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관례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교착이 되면 그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연히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소위의 결정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이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원장은 국민이 임명하는 겁니까? 사회를 보라고 국회 내부에서 임명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리를 무시하면 됩니까?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마치도록 해야지요. 아울러서 지역화폐 예산은 합의 처리된 거고요.

경찰국에 대해서 제가 예산 삭감을 주장한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경찰국을 신설할 때 법적으로 불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학계에서도 오히려 법률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을 못 합니다. 인정을 못 하는 조직을 어떻게 예산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멀쩡한,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헬러윈 데이 때 행사

처리 잘했던 것을 경찰 조직의 인사권을 지휘한다는 명목하에 들쭉서 놔서 경찰청이, 청장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조직 내부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 파벌로 만들고,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찰국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나만의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시지요. 논의를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만희 위원** 참 해괴망측합니다, 진짜. 경찰국 만들어서 이태원 사고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교흥 위원** 얘기 들어 봐요, 얘기 들어 봐.

○**이만희 위원** 이성만 위원 말대로라면 경찰국 만들어서 이태원 사고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성만 위원** 이 행안부에서 수십년 동안 경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왈가왈부 없이 지내 오다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총경 이상 인사권을 지휘한다고 만들어 와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만희 위원** 경찰국 만들어서 이태원 사고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교흥 위원** 얘기 들어 봐요, 얘기.

○**이성만 위원** 이 점 똑바로 하시고……

○**이만희 위원**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의하자고요.

○**이만희 위원** 이성만 위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만희 위원** 경찰국 만들어서 이태원 사고가 났어요?

○**문진석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간사님.

○**이만희 위원** 경찰국 만들어서 파벌이 생겼습니까?

○**문진석 위원** 위원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채익** 자, 이만희 간사님.

○**박성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야기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놓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이채익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
세요.

○김웅 위원 경찰국하고 감사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위원장 이채익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예산소위가 이렇게 다수결로, 저
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다수결로
처리한 것이 합리적 처리였다라고 얘기하는 말씀
들어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렇게 일방 강행
통과해 놓은 것을 본회의에 상정 안 하는 것은
위원장의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타당한 의사진
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 위원님들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의 행태를. 정말
너무 감정적이에요.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이것은 감정에 찬 예
산 갑질입니다. 저는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정
말 치졸하다 못해 비루합니다.

예결위에서 말이지요,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말악이다. 추태다. 보고 배우지
못했다. 비루하다’ 이렇게 동시대 국회의원으로
수치스러운 정도의 저질 표현을 하더니, 그 감정
을 그대로 상임위 예산소위에 갖고 와 가지고 예
산 폭거를 저지른 겁니다. 국정 발목 잡기지요.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윤 정부에 대한 저주를 하
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의사진
행발언을.

○장제원 위원 저도요, 야당 예결위……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제원 위원 야당 예결위 간사도 해 봤습니
다.

○이성만 위원 의사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
행발언.

○장제원 위원 발언 좀 합시다.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똑같이 애
기해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제원 위원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이채익 자, 조용히 하세요.

○전봉민 위원 좀 들어 봅시다. 회의 진행 좀
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참, 이성만 위원 혼자 회의합니
까?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라니까.

○장제원 위원 어떻게 우리 여당 위원 발언할

때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이고, 참 정
말……

좀 가만있으세요.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니까. 의
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좀
끼어들지 말고……

○이성만 위원 경찰국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이
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채익 자, 이성만 위원!

○장제원 위원 아이,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이성만 위원 반말하는 겁니까?

○장제원 위원 저도요……

발언해도 되나요?

○이성만 위원 반말하는 거예요?

○장제원 위원 내가 이성만 위원 허락 말고 발
언해야 됩니까?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이성만 위원 반말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채익 이성만 위원.

○장제원 위원 저도요, 야당의 예결위 간사까지
해 봤습니다. 예산 삭감 투쟁도 해 봤고 야당 때
가장, 문재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 투쟁했습
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예산에 대해
서는 다 뒷문 열어 봤습니다. 왜냐? 우리 국회도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대
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성을 인정받는, 가장 큰 선
거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대통령
을 뽑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견
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대통령의 주요 정책
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
리고 예산을 주는 겁니다.

대북지원 예산이요? 1조 관련 갖고 왔습니다.
북한과 아무런 합의된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
습니다. 그런데 갖고 와서 이것 시간 끝다가……
그래, 국회에 즉각 보고하는 조건, 그러한 부대의
견 들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적어
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예산, 특활비, 안 건드
렸습니다. 검경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물착스럽게 한 예산을 들어내 버리는
것, 저는 이런 야당…… 정말 감정이 섞인 저주
아닙니까?

특히 인건비 예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라면서요. 어떻게 월급까지 깎아 줄니까? 아무리
윤 정부가 미워도 공무원 예산을 깎아 버립니까?

인건비를 다 들어냈습니다. 업추비 다 들어냈습니다. 업추비가 장차관의 업추비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민생 현장방문, 기업 간에 업무협조 이런 데에 쓰여지는 거고 행안부의 업무추진비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이 행안부가 1670명인데 1억 8000인데, 과기정통부 823명인데 2억 700이고요. 고용노동부는 655명인데 1억 8000이고요, 농림수산부는 632명인데 1억 6700밖에 안 됩니다. 그걸 들어내요? 이게 예산 갑질이지, 윤 정부가 일 못 하게 발목 잡고, 국정 발목 잡기 외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정말 감정 자제하시고요. 그래도 정부가 이제 시작하는 정부 아닙니까. 이것을 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야당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문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맞습니까?

○위원장 이채익 예, 알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런 식으로……

○문진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좀 받아 주세요.

○장제원 위원 아니, 조금만,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끝낼게요.

발언하는데 정말…… 문진석 위원 발언할 때 내가 끼어들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왜 야당 위원들 훈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채익 자,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훈계 듣게 생겼어요?

○장제원 위원 지금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

○이성만 위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문진석 위원 아니, 예산안이 상정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이채익 문진석 위원.

○장제원 위원 위원장께서 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면 충분히 들었어요.

○김웅 위원 그러니까 찢리니까 훈계로 들리시

는 거예요.

○장제원 위원 아니, 무슨 발언을 하면……

회의를 합시다, 좀. 제가 빨리 발언 끝내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지 마세요.

○문진석 위원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감정적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또 그것도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이성만 위원 퇴장을 누가 당해요? 스스로 퇴장한 거지. 말 똑바로 하십시오.

○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의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성만 위원 퇴장당한 게 아니라 퇴장하신 거지.

○김웅 위원 사실상 그게 쫓겨난 거지.

○박성민 위원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장제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이성만 위원 때문에 정말 제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이성만 위원 그것은 똑같은 심정이에요.

○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 방송을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가 좀 더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듣기에 좀 거북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좀 들어 주세요.

○장제원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아니, 상정을 통해서 논의를 하게 해 줘야지요. 상정을 못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정해서 논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지.

○장제원 위원 마이크 켜세요.

○이성만 위원 아니, 혼자 얘기하십니까?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채익 장제원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이런 예산안은 위원장으로서 상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정대한 회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채익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오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못 합니까?

○김교흥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상정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다라면 국회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세요.

○위원장 이채익 의사진행발언의……

○김교흥 위원 이틀 동안 예산안 심의했는데 묵살돼 갖고 오늘 상정조차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주세요.

○오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채익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 하겠습니까.

○김교흥 위원 주세요.

○박성민 위원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김웅 위원 그러면 우리도 계속 하는 거지.

○김교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성민 위원 아니, 회의는 안 하고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합니까?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민주당은 또…… 왜 이렇게 합니까?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상정해 놓고 수정안을 만들든가 해야지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성만 위원 아니, 의안을 상정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의안을 상정해야지. 아니, 상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반대는 할 수 있어.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상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만 위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것도 국회에서. 그래서 단독 처리가 문제가 된다면 논의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조정하면 될 일을.

○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예결소위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냐고.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예산안 상정을 하고 여기서 조율하면 되지요, 조율하면.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만희 간사님하고 얘기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어저께 와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조정하려고. 여러분께서 묵살했잖아요.

아니, 이걸 합의 안 된 겁니까? 예산안 상정도 다 16일 날 의결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정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채익 현안질의 하고, 여야 간에 합

의되면……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상정을 시켜 주세요. 예산안 상정하고……

○위원장 이채익 합의가 안 된 걸 어떻게 상정합니까?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예산안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수정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채익 합의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상정은 할 수 있지. 그리고 의결 절차까지 가기 전에 서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예산안 상정까지 안 하면…… 이틀 동안 했는데 헛수고가 되니까……

○위원장 이채익 상정을 하려면 합의가 돼야 상정이 되는데……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경찰국 예산 하나 때문에 상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경찰국 예산 하나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경찰국 예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예산들이 다 상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임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상임위를 거부해요?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뭘 소리 하고 있어!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런 말씀 마십시오!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뭘 소리 하고 있냐고!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누가 반말이야, 지금!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마음대로 상정하고 안 하고 합니까, 이틀 동안 소위 한 것을?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합의 안 된 걸 어떻게 상정합니까!

○김교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경찰국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들이 주르륵 무너져도 돼요? 말이 됩니까?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채익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채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기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되 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산안 상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의를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할 순서이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지금 기관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5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별도로 안 해도 되지만 바라는 대로 퇴장하시고 기관장들께서는 증인신문이 끝나면 현안질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은 증인들을 빨리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 착석해 주었습니다.

294. 현안질의

(17시36분)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94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질의 시작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위원장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을 실시하되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7분을 사용 안하고 4분을 하고 보충질의 때 추가할 수 있지요?

○위원장 이채익 (고개를 끄덕임)

증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위원님은 기관장 등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질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선서하거나 답변할 때 마스크를 벗고 발언해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는 증인 2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증인 3명 중 출석한 증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고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함을 알려왔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참사 당시 현장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당시의 비통한 현장상황을 복기하는 것에 여기 계신 모두가 가슴이 메이는 아픔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것만이 지난 10월 29일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고 또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남겨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하나 남은 참회일 것입니다. 오늘의 현안질의가 이러한 결과물을 낳는 기반이 되길 위원장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기립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임재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류미진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출석 확인이 끝났으므로 증인에 대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현안질의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임재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미진 증인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임재 증인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임재** “선서, 본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사고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증 인 이임재

증 인 류미진

○**위원장 이채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이임재 총경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경님의 참사 당일 날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총경님께서서는 당일 저녁 식사 후에 9시 47분에 관용차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여 동안 차를 타셨는데요. 타신 후에 30분 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분 후에 총경님은 그 차에서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청이나 상부에는 어떤 보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채익** 이임재 증인, 마스크를 벗고 하십시오.

○**증인 이임재** 먼저 어떤 말씀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고인분들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은희 위원** 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에 답을 해 주십시오.

○**증인 이임재**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나오기 힘들, 물론 유족분들 앞에서 제가 어찌 감히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정말 그날의 진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상

규명 차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동안 차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그동안……

○**조은희 위원** 다른 곳에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했던 무전녹취록 다 있겠지만 또 통화기록도 있겠지만 21시 57분경에 아시는 것처럼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당시 현장관리하고 있던 112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위원** 상황실장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네요?

○**증인 이임재**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경찰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오늘 소상하게 그날의 진상을 밝힘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조은희 위원**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한 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증인 이임재**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가는……

○**조은희 위원** 모르고 있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갈 때만 해도 어떤 특정 지점을 가거나 현장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헬러원 축제의 전반적인 교통 상황이나 축제장 전체적인 상황 점점 차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진입로들을 가게 됐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당일 밤에 대통령실의 전화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콜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 부분도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과의 그런 부담은 있지만 정확히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기록을 복기한, 제 기억에 의하면 당시 23시 20분경에 행정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그 당시에는 제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겨를 없이 상황을 지휘하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6분 후에, 23시 26분에 다시 제가 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에서 30명 정도가 의식불명으로 CPR 중이다, 간단한 상황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계속 상황 파악 및 대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낱낱이 묻고 밝혀내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임재 서장님, 많은 언론에서 용산집무실 이전 후에 서초서와 용산서의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사 한 달 전인 10월 초 용산서 경찰관의 언론인터뷰에 따르면 지구대, 파출소, 심지어는 형사과 직원들까지도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래 업무 역량마저 훼손되고 있는 악순환이다, 진짜 지옥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장님, 올해 1월에 용산서에 부임하셨지요?

○증인 이임재 예.

○문진석 위원 용산집무실 전후를 다 경험했을 텐데 서장으로서 일선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지요?

○증인 이임재 예.

○문진석 위원 언론보도대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선 현장의 고충이 사실입니까?

○증인 이임재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가 다 늘어난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나 경비 쪽의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추가로 저희 용산경찰서에 배정이 돼서 보충이 됐습니다. 물론 현장 직원분들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인원 보충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청의 무전록을 보니까 용산의

집회 현장을 마지막까지 통솔하셨지요?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여러 정황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민생치안보다는 집무실 경호·경비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어떤 업무에 과중을 두고 특정 업무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회·시위가 먼저 개최가 되고 있었고 또 일단 현장 지휘를 서장이 하라는 근무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집회·시위 관리를 하고 끝난 다음에 헬러윈 축제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상당구 출신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분이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제가 정확한 어떤…… 하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면 사고 난 지, 10시 15분에 났으니까 50분 동안 결국 시간을 좀 허비했다, 그런데 또 관용차 타고 오시느라고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이임재 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죄송하고 하여튼 고인분들이나 유족께……

○정우택 위원 아니, 사실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 시간 동안에 제가 질문을 다 못 합니다. 묻는 것에만 확실히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 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 아까 상황실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받은 시각이 대충 몇 시나 됩니까?

○증인 이임재 그때 당시가 21시 57분으로 기억합니다.

○정우택 위원 9시 57분이요?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별 상황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상황실장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 느끼시기에 그 보고가 허위보고였다, 45분에 이미 사고가 났는데 57분에 아무런 큰 사고,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위보고 아닙니까?

○증인 이임재 그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자의 어떤 현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위원 그거 허위보고지요. 9시 45분에 사고가 났는데, 9시 57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심각하지 않다, 그거 잘못된 보고이고 허위보고라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이미 10시 55분에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태원 엔터가구거리에 뒷짐을 진 채 이태원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진 게 나왔는데 이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까, 왜 그렇게 처신 하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말씀 드리기도 참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정우택 위원 상황을 몰랐나?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위원 알았습니다.

또 밤 11시 36분에야 직속상관인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왜 11시 5분에 도착하시고 30분이나 늦게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대략적인 어떤 위급상황을 파악한 게 23시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 23시 10분경에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파출소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확한 위급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우택 위원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보고가 늦었다?

○증인 이임재 아,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 및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상황계통에서 상황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파출소……

○정우택 위원 더군다나 증인께서는 위기관리센터 센터장도 하셨지요? 그러면 위기관리 봤을 때 이거 직속 누구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의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또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임재 전 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계속 파출소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급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오신 내용도 몰랐었고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급박하게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택 위원 아, 옥상에 주로 계셨군요. 현장에 계시지는 않고요.

○증인 이임재 예, 거기가 위치가 제일 지휘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인 군중의 흐름과……

○정우택 위원 그래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현장에서 이 전 서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 중간에 제 기억으로는 24시 30분경에 소방에서 소집한 긴급현장통제단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면 11시 5분에 도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증인 이임재 그 부분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현장, 정말 급박한 상황 지휘하느라 그런 상황보고를 챙기지도 보지도 어떤 지시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그 후에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현장수습 도중에 대기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우택 위원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아까 상황실장이 허위보고했다는 심증을 저는 갖고 있고 또 이번에도 보면 상황보고서에 이렇게 허위로 기재하면, 상황실장이 순전히 엉터리로 보고서도 작성하고 또 상부에 보고도 잘못 했고……

○증인 이임재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황실장이 허위보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그런 판단을 근거로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서장께서 설령탕집에서 나오셔서 바로 현장에 가서 교통 통제만 했어도 골목길 안팎의 인파가 압력을 덜어 줄 수 있었다, 그랬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만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녹장보고라든지 직무태만이 라든지 또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참사가 있다고 저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류미진 총경께 질의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상황실로 복귀하셨습니까? 복귀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이채익 류미진 증인, 마스크 벗고 하세요.

○증인 류미진 23시 39분에……

○정우택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채익 마이크를 갖다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증인 류미진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정우택 위원 23시 39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연락을, 어떤 형식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증인 류미진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압사 신고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시다.

○정우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류미진 예,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정우택 위원 그다음에 사고가 난 지 1시간 46분이 흐른 후에, 0시 1분에야 김광호 청장한테 보고를 문자로 하셨습니까? 보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류미진 상황실 직원한테 연락을 받고 상황실로 돌아가서 상황팀장한테 용산서장이 서울청장한테는 보고를 해서 서울청장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장은 이미 현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용경력을 빨리 현장으로 배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 가용경력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 사항을 정리해서 서울청장한테 문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우택 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상황관리관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보다도 상황관리관이 더 상황 인지가 늦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증인 류미진 죄송합니다.

○정우택 위원 시간이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 김교홍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김광호 청장 또 지금 이임재 총경, 류미진 당시 상황관,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다 몰랐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 처참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죄가 되는 게 아니예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왜 몰랐냐 이거지요.

맞지요, 두 분?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김교홍 위원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증인 이임재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교홍 위원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면서 총경께서 지금 말씀이, 증인께서 ‘업무가 과중된 건 사실이지만 병력은 받았다, 그러나 경비병력이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맞지요, 총경님? 집회·시위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인파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26일 날, 사고 당일 3일 전에 이태원 헬러원 축제 공공안녕 위험보고서 알지요?

○증인 이임재 예, 문제가 된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거 알지요? 거기에 보면 이거

위험하다,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 같으니까 경찰 투입해서 차도·인도 구분해 주고 폴리스라인 쳐야 되고……

이걸 증인 서의 정보과에서 이미 올린 거예요. 맞지요?

○증인 이임재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이미 다 알렸고……

그리고 류미진 총경, 증인.

그날 사고 당일 밤 8시 37분과 9시 1분에 112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야, 이거 위험하다. 소방본부, 소방하고 우리 공동 대응하자’ 두 번이나 상황실에서 연락이 갔는데 그 당시 아무리 상황실에 없다고 하더라도 류미진 증인은 자기 집 무실에서 이 보고 못 받았습니까?

○증인 류미진 예,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못 받았어요?

○증인 류미진 예, 받지 못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여러분들은 다 모른다고 그러고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생명 158명이 사망한 거예요. 보고를 받아야 할 사람, 알아야 할 사람들이 다 모르고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장관부터 청장, 서울청장, 서장, 상황관.

그리고 아까 상황실장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 게 9시 57분이지요?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 상황실장이 112상황실장 송병주 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 송병주 실장은 이태원파출소에서 상황을 다 알았어요. 상황을 다 알았다고, 뭘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긴.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태원파출소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송병주 실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다 모르고 보고 못 받았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이 빨리 그만뒀야 된다, 서울청장·경찰청장 다 그만뒀야 된다, 그래야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고 책임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사후대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증인 두 분은 답변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께 답변 시간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를 출신 김철민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는데…… 안 계시네요.

그러면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용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판 위원 김용판 위원입니다.

이임재 총경, 증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집단, 소위 혼잡경비의 대상인데 혼잡경비라는 의식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증인 이임재 가지고 있었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러면 사전에 현장에 직접 나가 봤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 전날도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 다녀왔습니다.

○김용판 위원 현장에 가 봤어요?

○증인 이임재 예, 다녀왔습니다.

○김용판 위원 현장에 가 봤으면 인파가 많이 몰리면 위험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텐데.

그리고 그 당일 날 현장에도 보면 137명이 배치됐지만 정보형사는 한 명도 배치됐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정보는 왜 배치 안 했어요? 집회·시위 현장에 다 데리고 갔습니까?

○증인 이임재 일단 집회·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가 된 다음에 당연히 담당……

○김용판 위원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본 위원은 이것은 첫째로 유관기관이 제대로 안 된 실책지만 그 첫째는 정보의 실책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서장은 그 당시 용산 집회현장에 갔다 하더라도 이 혼잡경비를 누군가에게 책임지고 맡겼을 텐데 누구에게 맡겼어요, 책임을?

○증인 이임재 자칫 이런 말씀이 책임 회피로 보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김용판 위원 아니, 그대로 답변하세요, 군말하지 말고.

○증인 이임재 그때 당시 헬러원 축제에 대해서는 112상황실장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판 위원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어요?

○증인 이임재 계획서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용판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당에서 특위 위원들이 갔을 때도 용산구청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에서 다 자체적으로 할 줄 알아 가지고 그 전에도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용산구청에서는 신경 별로 안 썼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의 문제는, 사전에 용산경찰서하고 미리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태원역장도 나온 거 알고 있지요?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김용판 위원 역장이 나왔다는 것은 많을 때 무정차를 할 것인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평소에는 12명 근무하지만 그 당일 날은 배가 근무해서 26명까지나 서울교통공사 인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액션 취한 거 없지요? 알고 있나요?

○증인 이임재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112상황실장이 21시 34분경에 역장에 전화해서 무정차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그 진실 공방을 떠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했었다 그러면 당연히 자체적으로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경찰 출신이지만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이런 문제가, 사고가 참사 사건 이후에야만 보고됐다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김용판 위원 류미진 총경, 최초의 위험성이 있는 신고는 저녁 6시 34분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지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증인 류미진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 나을 무렵에는 몰랐겠지요?

○증인 류미진 예,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리고 2시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9시부터 들어오거든요. 8시대에는 거의 신고가 없어요.

그런데 6시 34분 신고가 가장 정확한 신고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내려오는 사람들하고 중간에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현장에

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 신고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신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류미진 총경께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들어올 때는 나한테 신속히 바로 보고해라, 그걸 하고 나는 이석을 해도 해야 돼요, 100% 알아 있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중요성 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실무자들은 그냥 타성에 젖은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지요? 그래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하위 직원들이 안 알려 줘서 몰랐다고 한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용산서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장이라는 그 자리는 상황 보고받고 나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 나기 전에 안 나도록 충분히 대처를 하고, 난다고 그러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게 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재난안전법에 보면 4조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주체가 있든 말든 이 안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막도록 노력할 책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이번에 일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경찰이 면할 길이 없지만 바로 자치단체, 즉 용산구청과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경찰은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용산구청, 서울시—의 그야말로 설마 이런 사고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과실에 의해서 합작으로 만들어진 인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대로 몰라서 뒷짐을 지고 걸어갔다고 그랬고 또 파출소에 올라가야만이 제대로 잘 보였기 때문에 지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나는 참 무책임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

어떤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뭐가 들어오면 전화라도 확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건 나기 전이라도 필요시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느냐는 의견도 물어보고, 실무적으로. 아마 112상황실장은 무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증인 이임재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날 밤 112실장하고 통화를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잘 되지를 앓았고……

○김용판 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일차적으로 112상황실장의 책임은 정말 면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증인 이임재 무전으로도 많이 찾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판 위원 총체적으로 경찰이 이런 큰 집회라든지 또는 이런 혼잡경비의 대책은 정말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최악을 염두에 두고 사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갖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대형 참사를 만났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각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 전 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올해 1월에 용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 변동이 없으셨어요.

○증인 이임재 예.

○최기상 위원 서울에 경찰서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3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31개소.

대통령실이 용산에 이전하기 전에 용산경찰서 업무량이 그 31개소 중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속한 곳입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상층부에 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그때도 업무량이 많았다는 말씀이요?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업무량이 당연히 더 많이 늘었겠습니까.

○증인 이임재 당연히 경호나 경비 쪽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 위원 대통령이 드나들 때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시위대도 막아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일이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임재 예.

○최기상 위원 아까 업무가 과중해진 것에 대응해서 인력이 보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 보강됐습니까?

○증인 이임재 이전에 앞서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지만 제 기억에 의하면 80명 정도가 추가로 용산서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디 어디에 일을 하게 배치가 됐습니까?

○증인 이임재 경비·정보·교통·안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유관부서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리고 조직이 강화되거나 조직의 구성이 좀 바뀌거나 이런 작업도 같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조금씩 부서 간 이동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기상 위원 그럼에도 용산서의 업무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많이 늘어서 부담이 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또 현장 직원들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다른 말씀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 이번의 이태원 헬러원 때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해야 된다는 요청을 서울경찰청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임재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참사 며칠 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들다 제가 주무부서에 이번의 헬러원 축제에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다시 또 경력 운용 주무부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당일 집회·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지원대, 경력 부대에 대해서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가 있었으나 그때도 집회·시위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다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기상 위원 교통기동대 외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 배치를 요청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판단하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습니까?

○증인 이임재 많은 인파에 대한 관리, 안전 관리 부분에서는 혼란된 정에 기동대 부대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이 축제뿐만 아니라 지구촌 축제 때도 기동대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용산서에서 담당하는 분이 서울청에서 누구로부터 그런 부분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증인 이임재 서울청 주무부서 실무 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용산경찰서장이신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왜 그랬느냐 하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시위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재차 검토가 끝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청장님이 두 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용산서 자체적으로라도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태원 헬러원 때 질서유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비력을 보강하는 판단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증인 이임재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기동대 운용에 대해서는 서장의 권한이 아니고 서울청에서 전체 운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 부분은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자서 경력에 대해서는, 물론 대단히 죄송스럽고 많이 부족하지만 전년도나 17년·18년·19년에 비하면 2배 이상, 3배 이상 많이

최대한 동원을 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기상 위원 류미진 총경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친 부실한 대응, 그로 인해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증인 류미진 제가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상 위원 맨 처음 참사에 관한 연락을 전화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 담당자가 개인 사무실로 찾아왔던가요?

○증인 류미진 상황관리관에게는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전용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폰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니다.

○최기상 위원 그 전에는 아무도 관련해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류미진 예, 죄송합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기상 위원 당시 종합상황실에 근무한 분이 총 몇 분이세요?

○증인 류미진 상황실에는 접수요원이 삼사십명 정도 있고 그리고 분석요원이 한 열 명 정도 있고 그리고 팀장이 있고 또 기능별로 나와서 상황 대응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분들 중에 아무도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전까지?

○증인 류미진 예,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여러분들께서 발언 하나하나를,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또 또렷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이임재 서장님.

○증인 이임재 예.

○박성민 위원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또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경찰관 동료분들과 또 모든 분들께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증인 이임재**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인분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무어라 어떤 말씀으로 사죄를 드리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인과 관리는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차도를 인도로 조금 더 배치를 했거나 아니면 기동대를 배치해서 인원들을 조금 분산시켰거나 했으면 이런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겠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너무나 참 참담합니다.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특수본으로부터 소환 통보받았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언제쯤 소환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상황을 꼼꼼히 기억을 하시고 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침묵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보계장님께서도 유명을 달리하셨고 또 이런 불행한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하시더라도 하실 말씀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밝힐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통신은 주로 휴대폰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무전기도 자주 사용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상황이 있을 때는 주로 무전을 많이 사용하고 보조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날은, 설령탕집에서 식사하시고 나온 그날은 무전기를 서장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참모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증인 이임재**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무전기를 안 가지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성민 위원** 서장님이 주로 무전기를 직접 소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참모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직접 소지하기도 하고 주변 참모들이 소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박성민 위원** 그날 23시까지는 상황을 몰랐다고 하시는데 혹시 무전기로는 그 상황이 전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증인 이임재**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관련 내용들의 무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위원** 그러면 상황을 몰랐던 건 아니네요?

○**증인 이임재** 그러나 단발적인 무전이 막 섞이고 또 그 무전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면……

○**박성민 위원** 9시 24분쯤에 설령탕집에 들어가서 47분에, 한 20여 분간 아주 짧은 식사를 하고 나오셨는데 식사하고 다음 스케줄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그렇게 식사를 짧게 하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저는 이태원, 전날 방문했던 것처럼 이태원을 가서 현장……

○**박성민 위원** 사고 난 상황은 몰랐지만 거기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관한 경비는 따로 다른 부대에서 하고 있지요?

○**증인 이임재** 맞습니다. 전담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전담 부대가 따로 있지요?

○**증인 이임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또 시위·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 경력이 보충됐지요?

○**증인 이임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보충됐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날 당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전해 오면서 용산서에 추가로 보충된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인 이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명 정도가 저희 용산서로 추가로 배치가 돼서……

○**박성민 위원** 80여 명은 대통령실 경호하는 인력 이외지요? 경호하기 위한 인력은 아니지요?

○**증인 이임재** 그렇습니다. 집회·시위나 여타 관련 여러 가지 제반 업무에 대한 보충 차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날 당시에 서울경찰청 관내, 용산 관내에 집회신고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증인 이임재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박성민 위원 100건 정도 있었습니다. 100건 정도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한 5만 명 정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는데 이 단체에서 사고 지점으로 흘러 들어온 인파는 없었습니까? 채증조는 없습니까?

○증인 이임재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원래 이태원역에 인파가 집중될 이런 것 충분히 알고 계셨지요?

○증인 이임재 예, 평소 주말에도 많이 인파가 몰리는 그런 지역이고 또 특히 헬러윈 데이가……

○박성민 위원 그때 당시에 이태원 지역에 최대 인파가, 몇 시쯤에 최고로 인파가 많았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언론보도 등을 보고, 제 기억으로는 21시경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9시요?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6시 이후부터 해서 7시, 8시에도 인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 차도를 1개 차선을 차단해서 인파를 그쪽으로 뺐다가 한 19시 이후로 다시 차도를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건 누가 했습니까? 서장님이 하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21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민 위원 아닙니다, 20시경, 20시 이전에.

○증인 이임재 그때는 제가 집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때는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이임재 그때는 112상황실장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체익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이성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 인천 부평갑 이성만 위원입니다.

류미진 총경님, 사건,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당일 날 상황관리관이셨지요?

○증인 류미진 예,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직 식으로 서는 거지요?

○증인 류미진 예?

○이성만 위원 당직 형태로 서는 거지요, 돌아가면서?

○증인 류미진 예, 당직관이었습니다.

○이성만 위원 원래는 직책이 됩니까?

○증인 류미진 원래 직책은 인사교육과장입니다.

○이성만 위원 인사과장님이시고.

그래서 며칠 만에 한 번씩 상황관리관을 서시지요?

○증인 류미진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당일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한 사람은 49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황3팀장도 있었고 접수반 그다음에 분석대응반 등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박이로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지요?

○증인 류미진 예, 상황팀은 전문적으로 4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런데 류미진 총경께서는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습니까?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어요? 본인 사무실로 가셨다면서요.

○증인 류미진 제가 사무실로 간 시간은, 아침에 교양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황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성만 위원 아침?

그러니까 아예 112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증인 류미진 죄송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러면 상황3팀장은 무조건 류미진 총경님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류미진 예, 상황팀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증인 류미진 예.

○이성만 위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3팀장이 즉시 전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증인 류미진 예, 그렇게……

○이성만 위원 여기 매뉴얼을 보니까 ‘대형 재난·재해, 노사분규 등 동시다발 신고가 예상되는 경우 접수자가 상황팀장 통보, 상황팀장에서 전 근무자에게 전파, 정보를 공유하라’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는데 맞지요?

○증인 류미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면 당시에 상황관리관인 류미진 총경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기 전에 미리 상황팀장이 근무자에게 전부 다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증인 류미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이성만 위원 확인 안 했습니까?

○증인 류미진 예.

○이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날 상황3팀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관리관님한테는 늦게 통보했지만 나머지는 다 통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상황3팀장도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증인 류미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만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당직사령을 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증인 류미진 예,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리고 당일 날 10시 15분경에는 서울청 상황실 실무자들이 용산서 상황실에다 연락해 ‘현장 상황을 파악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오후 10시 18분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공조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황실에서 이 내용을 다 알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류미진 제가 보고를 받기 전의 상황이라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만 위원 이후라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증인 류미진 대기발령을 받고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장님, 이임재 총경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 주야간 포함해서 4개 중대 또 여경 2개 팀 또 교통 관련 인력을 해서 한

350명 정도가 매일 경호·경비 인력에 투입이 되었지요, 추산컨대?

○증인 이임재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부대가 배치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리고 당시에 경찰, 일선에 있는 경찰 직원들은 블라인드의, 익명 게시판에 살려 달라며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호소의 글이 올라갔던 게 사실이지요?

○증인 이임재 예,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리고 교통과 근무 시간을 살펴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만 시간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통 인원이 19명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당 3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업무가 더 과중……

○이성만 위원 대충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불만이 많고 누적되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증인 이임재 예.

○이성만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용산구나 서울시로부터 헬러윈 데이 치안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온 적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협조 요청이 왔다는 사실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용산구청과 이태원 상가연합회랑 간담회……

○이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는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오히려 서울경찰청장은 협조하지 않은 거지요, 다른 치안 문제 때문에?

○증인 이임재 협조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이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다음에 당일 날 마약 수사가 있었지요? 형사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10개 팀을 운영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이성만 위원 그리고 실제 마약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날은 예방과 수사가 동시에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치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자를 바꿨잖아요. 9시 33분에 1개 팀을 일반 질서요원으로 바꿨는데 그런 세세한 사항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나중에 그런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증인 신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 가능한 한 증인으로 호칭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서장이나 총경이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성함을 부르고 증인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를 출신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구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참사 나흘 전에, 10월 25일인데 이태원파출소장이 경찰청 내부 메신저에 ‘헬러윈 데이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력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십니까?

○증인 이임재 당시에는 교통기동대뿐만 아니라 원래 저희들은 경비용 기동대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경비용 기동대도 같이 요청했다?

○증인 이임재 예.

○이해식 위원 이미 참사 나흘 이전에?

○증인 이임재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10월 26일, 참사 사흘 전에 정보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 이태원 헬러윈 축제 공공안전 위험분석이라는 이 서류 이것은 증인께서 결재를 하신 거지요?

○증인 이임재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보고받지 못한 정보보고서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이해식 위원 용산서 정보형사들이 작성한 건 데도요?

○증인 이임재 모든 보고서가 다 저한테 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과·계장이 선별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이 분석보고서는 상당히 가벼운 그런 정도의 보고서라고 봐야 됩니까? 어떨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과·계장이 판단을 해서 서장이 필요하다……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서에는 정보과 형사가 23명이 있지요?

○증인 이임재 예.

○이해식 위원 그때 참사 당시에 참사현장에 혹은 그 인근에 정보과 형사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됩니까?

○증인 이임재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지만 저는 당연히 그런 행사를 하면 최소한 지역 담당 형사 정도는, 지역 담당 정보관 정도는 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배치는 서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물론 제가 최종 결정권이 있고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대책회의 할 때부터 헬러윈 축제에 대해서 전 서적으로 대비를 하자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행사가……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네요. 정보형사 배치 상황도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증인 이임재 당연히 배치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배치된 걸로 알았다?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집회·시위 경비를 다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랬을 즈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증인 이임재 그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 참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증인께서 참사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정보과 형사는 여전히 한 명도 현장에는 없었네요.

○증인 이임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류미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달 정도 만에 한 번씩 당직을 상황관리관으로 선다 그거지요?

○증인 류미진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침에 보고를 하고 지시할 것

지시하고 사무실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상황관리관의 근무행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관례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류미진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총경분들이 상황관리관을 서도 류미진 총경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상황관리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증인 류미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관례다 그런 얘기시군요.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보면 동시다발 신고가 예상되는 경우 접수자가 상황팀장에게 보고하고 상황팀장이 전체 근무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열한 차례나 압사의 위험이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위급한 112 신고가 중복,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이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다발 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황 전파를 하게 돼 있고 상황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매뉴얼에 보니까.

당시에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류미진 사실 저의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상황관리관이 몰랐으면…… 분석팀도 한 10명 정도 있다고 그랬었지요?

○증인 류미진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서류를 보면 4명이라고, 분석관은 4명 그리고 팀장 또 위에 관리관 이렇게 있어서 대체로 상황 관리, 상황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건……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11건이 아니고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14건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관리관님도 문제지만 실제로 상황 분석을 해야 되는 현장 경찰관들은 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류미진 당시에 분석요원들이 어떻게 근무

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이임재 증인.

○증인 이임재 예.

○장제원 위원 오늘 내가 이임재 증인과 민주당 위원님들 간에 현안질의 질의 답변을 보니까 어찌면 이렇게 온정적인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치안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장관한테는 모욕까지 주고 막 말,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니 현장 치안의 핵심 책임자에게는, 핵심 책임자가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

○이해식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

○장제원 위원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천준호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렇게 질의를 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들어 보세요.

○천준호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이성만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원장 이채익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성만 위원 아니, 들어보시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한테 얘기를 해요.

○장제원 위원 시간 좀 꺼 주세요.

○이해식 위원 자기 발언을 해요, 자기 발언을, 질의를 평가하지 마시고.

○천준호 위원 증인신문을 하셔야지요.

○장제원 위원 증인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이성만 위원 질의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세요.

○위원장 이채익 여야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하시고요.

○이성만 위원 이해를 해 주려 해도……

적절히 하시든가, 매너를 지켜 가면서.

○장제원 위원 참 나, 이성만 위원이 매너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조응천 위원 나도 어이가 없네, 나도.

○이성만 위원 매너 좀 지키시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채익 여야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신문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꺼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엄중 경고해 주세요. 아니,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임재 증인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떠들어요.

○이성만 위원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위원의 말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채익 자, 이성만 위원.

○장제원 위원 질의의 내용은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식 위원 고함 지르지 마세요.

○김교흥 위원 소리 지르지 말고 빨리하세요.

○장제원 위원 소리는 이성만 위원한테 지르지 말라 그러세요.

○용혜인 위원 시간을 끄셨으면 마이크도 꺼 주세요.

○전봉민 위원 마이크 켜어요.

○위원장 이채익 지금 이 엄중한, 우리가 이 일을 앞두고 오늘 핵심 관리관이었던 또 지휘관이었던 분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데 우리 여야 위원님들 좀 진중하고 신중하고 또 우리 국민을 생각합시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장제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이임재 증인, 저는 오늘 이임재 증인의 답변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질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참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그 미스터리 같은 180분, 그 미스터리만 보더라도 저는 참 나쁜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나는 몰랐다,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저는 나쁜 것을 넘어서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역사에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이임재 위원님, 저는 책임 회피할 생각이……

○장제원 위원 112상황실 직원, 부하 경찰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6시 34분부터 9시 10분까지 ‘대형사고 일보 직

전이다’, ‘압사당할 것 같다’, ‘다치고 쓰러지고 난리다’ 이렇게 112상황실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못 받았다고요?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로 112상황실 직원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노총 시위가 8시 30분에 끝났지요?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최종적으로 지휘한 것은 21시 20분까지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다음에 설령탕 거나하게 드시는 9시 40분까지, 그 시간 현재 30명의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정말입니까?

○증인 이임재 정말 참담하지만……

○장제원 위원 범죄 은닉이에요.

○증인 이임재 정말 저도 서장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장제원 위원 국민들이 압사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 그 10시 15분 첫 사망자가 났을 시기에 서장은 차에 있거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까?

사진을 보세요. 국민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서장은 뒷집 지고 산책하고 어슬렁거리는 저 한 장의 사진이 서장이 얼마나 나쁜 경찰인지, 그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부하 경찰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그 자세가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 것인지.

종합치안대책 보고서 은폐를, 엄폐의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이……

돌리세요. 사진 좀 봅시다.

저렇게 국민들이 아비규환의 시점에, 사진을 보십시오. 거나하게 설령탕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종합치안대책 보고서를 은폐하는 이런 서장이 모든 범죄 혐의는 부하 경찰에 있다……

○증인 이임재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 부하 경찰에게 있지요. 보고하는 것 부하 경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하 경찰들을 죽일 경찰로 만들고 있는 그 서장의 모습이……

○증인 이임재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이임재 증인의 모습입니다.

○증인 이임재 제가 정말 책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장제원 위원 저는요 도저히 이것은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도록 한심한 경찰인지, 이렇게 문제 있는 경찰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이임재 위원님, 제가 고인들과……

○장제원 위원 들어 보세요!

사법적 책임을 넘어서 저는 그런 못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장은 역사가, 우리 국민들이 더 큰 벌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 이임재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예.

○증인 이임재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23시야 상황을 알았다는 것은 경찰서장으로서 너무나 처참하고 정말 유족분들이나 고인분들께, 국민들께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처참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장 지휘관인 경찰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지 그날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다시는 참사가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저는 전혀 직에 연연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에 상응한 모든 책임을 다 질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하 직원에게,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런 발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장제원 위원 직을 연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범죄 혐의자예요.

○증인 이임재 예, 죄송합니다.

○이형석 위원 발언하게 들어 보세요.

○장제원 위원 왜 이렇게 감싸요? 왜 이렇게 감싸니까?

○이형석 위원 뭘 감싸요, 답변할 시간은 줘야지.

○장제원 위원 부끄럽지요, 감싸니까?

○이해식 위원 뭘 감싼다 그래요.

○장제원 위원 감싸고 있잖아요, 지금. 대변하고 있잖아요.

○증인 이임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 형사사법적인 그런 처벌을 앞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른 행안부장관……

○장제원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몰랐다는 게?

○위원장 이채익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안 하신다고……

○이형석 위원 예, 저는 행안부장관에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PPT 준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류미진 증인, 당시 앞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오전에 교양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당직 관련된 인수인계나 이런 건 아니고 원래 평소에 하시던 교육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류미진 아침에 교양 했던 건 당직자들 대상으로 교양을 했던 겁니다.

○용혜인 위원 당직자들 대상으로 교양을 하셨다고요?

○증인 류미진 예.

○용혜인 위원 그리고 그 뒤로는 상황실에 안 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23시 넘어서 보고 받은…… 23시 39분에 연락받고 상황실로 이동할 때까지 안 가셨던 게 맞나요?

○증인 류미진 죄송합니다.

○용혜인 위원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게 보통의 관행으로 알고 있더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상황실은 상황실 알아서 돌아가고 당직은 사실은 이름만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관리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당직인지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당직 근무일지거든요. 여기 보면 류미진 증인의 이름과 서명이 있어요. 이 서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서울청에서 그날 말고도 보통 상황관리관들이 다 이렇게 서명할 텐데 관행적으로 상황실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당직일지는 도대체 뭐 하러 만듭니까? 여기에 서명 왜 하셨어요?

○증인 류미진 ……

○용혜인 위원 10월 29일 다중운집 상황 준비태세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용산경찰서로부터 받은 당직실 근무일지인데요.

화면 넘겨 주세요.

당일에 누가 근무하는지가 나옵니다.

이것 첫 페이지 맞나요?

당일에 누가 근무하는지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 당직 관련 상황 지령 근무일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시 30분에 근무교대 하면서, 관내 헬러원 축제 및 삼각지역 주변 집회 등으로 다중운집 및 소란으로 신고 폭주 예상된다고 당직일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6시 34분이 첫 신고였다는 걸 기억을 하면 이 근무 교대가 참 안타까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근무 교대하면서 현장 상황들 파악하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청 당직 근무일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것 보겠습니다.

10월 29일 서울청 당직 근무일지인데요. 보시면 류미진 증인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팀장이 전화 점검 내용들을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외청 근무자 전화 점검한바 특이사항 없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1시 2분부터 1시 19분까지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특이사항을 전화 점검을 통해서 당직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더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당직 근무 중 취급사항인데요. 이거는 그냥 순찰만 정리하는 부분인 것 같은 한데 여기까지 전반적인 당직 근무 기록 일체를 달라고 해서 받은 서류인데 어느 한 군데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한 내용이 서울청 당직일지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미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서울청장이 현장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용산서 당직일지보다도 못합니다.

아까 오전에 당직 관련해서 교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산경찰서 상황지랑 근무일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열리는 다수 집회, 헬러원 축제 등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류미진 증인.

○증인 류미진 예, 아침 교양 시에 당직자들에게, 근무하고 관련해서 중요사항 있으면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교양을 했습니다.

○옹혜인 위원 특별한 유의사항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23시 39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없으셨던 거지요?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헬러원 관련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증인 류미진 일반적인 수요 관련한 내용으로 교양을 했습니다.

○옹혜인 위원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112신고 관련해서 용산경찰서와 같이 뭘 유의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보고받고 계획 세우신 바가 있었습니까?

○증인 류미진 저는 주무 업무가 아니고 당직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

○옹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당직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 참사 당일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신 상황 그리고 서울청은 헬러원 축제로 서울 전역에서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직을 서는 상황관리관에게 어떠한 대비도, 준비도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관련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책임이 큼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상황실을 통제하는 당직 상황관리관에게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안내도 없었고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모른다, 이게 서울경찰청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장 등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끝까지 국회에서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재 증인에게도 여쭙겠습니다.

용산서가 남영역 부근에 있지요?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태원파출소는 어디 있지요?

○증인 이임재 이태원역 근처에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렇지요.

참사 이전에도 이태원역 1번 출구 부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많이 가 봤습니다.

○옹혜인 위원 보시면서 혹은 회의 보고받으면서 해당 장소의 지형이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위태롭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당연히 인파에 대해서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인파에 대해서는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청에서 나온 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 이임재** 예, 정확히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용혜인 위원** 여기에 보시면요, 2006년 5월에 당시 경비과에서 ‘2005년 10월 열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주 참사는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적어 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있어요. 뉴키즈 온 더 블록 공연장 사망사고, 보신각 타종행사 사망사고 등등……

대통령실에서 참사 직후에, 주최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무한한 안전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혜인 위원** 최근에 대통령실의 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주최가 있건 없건 경찰이 대응했어야 했다고 경찰청장 면전에서 엄중하게 꾸짖으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물론 경찰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출신 김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 이임재 증인, 얼마 전에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서 추궁을 하고는 있습니다라는 과연 두 증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밀떡으로 만든 떡볶이 먹방을 하면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참사가 어떻게 다시 안 일어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증인들, 혹시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려다 보면 그걸 막는 여러 가지 장치나 기능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작동하지 않아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유감스럽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헬러원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요.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게 당일 18시 34분에 있었던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살 수 있었다, 그 젊은 피해자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드는 거지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헬러원 일어나기 2주 전에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요. 이때 2022년 10월 15일 04시경에 이태원에 있었던 시민이 인파가 너무 엄청나니 혼잡이 심해서 안전 우려가 있다라고 현장 정리를 해달라는 112신고를 했습니다. 2주 후에 있었던 신고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12에서는 이태원과출소로 연락을 했지요. 연결시켜 줬지요.

당시 이분이 이때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했어요. 당시에 어떤 경찰분은 소리를 지르고 전혀 응대를 안 해주고 그나마 순경이었던 분이 친절하게 받아는 줬으나 결국 현장 출동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제보자가 112신고센터하고 이태원과출소에 네 차례 통화했던 통화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 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동을 했다고 안내문자도 보내 줬대요, 자기에게. 하지만 출동은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헬러원 참사 그 당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있었던 거지요.

류미진 증인, 당시에 상황실에 있지 않았지요?

○**증인 류미진** 예, 죄송합니다.

○**김웅 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날 류미진 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보다는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되고.

상황관리관들 당직은 선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

황실에 없지요?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상황관리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상황실에서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류미진 증인만 그랬던 게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다른 상황관리관들 그 상황실에서 근무합니까, 당직들?

증인, 어떻게습니까? 근무하지 않지요?

○증인 류미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 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팀장이 대부분 대치를 해 왔지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일과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울청의 상황실은 거의 모든 것을 틀어잡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었을 때 경비부터 시작해서 치안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당직사관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언제부터 112신고가 들어가도 현장파악을 하지도 않고 위로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당일 류미진 증인이 아닌 다른 당직사령관이 있었어도, 당직상황관이 있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누가 있었든지 간에 용산서장이었던 이임재 증인은 23시까지 보고를 못 받았고 이미 그때 수 건의 신고가 쇄도를 하고 있었는데 21시 57분경에 상황실장은 특이상황 없다고 답을 하고 있었고 류미진 증인에게는 23시 39분이 되어서야 연락이 갔었지요. 이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면 참사도 구조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들에게도 책임은 있겠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대한민국이 왜 이런 위기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임재 증인, 용산서 정보과에서 만든 문건, 본인은 그것 못 봤다고 하는데 그것 어디까지 보고됐습니까? 서울청으로 갔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웅 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증인 이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시갑 출신 조응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이임재 증인, 언론에 보면 용산경찰서에서 이태원 헬러원 치안대책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다, 거기 보면 기동대 1개 제대를 4개소에 두 명씩 배치해서 질서 유지하겠다 그렇게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기동대 1개 제대가 배치가 안 됐지요?

○증인 이임재 거기 대책서에 나온 건 교통기동대이고 당일 날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교통기동대는 언제부터? 9시 반부터요?

○증인 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좀 늦게 온 거지요. 이것은 교통기동대예요?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까 최기상 위원님 질의 때 서울청에다가 기동대 지원요청했다, 이것은 교통기동대가 아니고 일반기동대이고?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일반 경비용·진압용 기동대입니다.

○조응천 위원 듣기에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제가 워낙 실무진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몇 번입니까?

○증인 이임재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공문으로 했습니까?

○증인 이임재 실무진 간 협의를 했는데 최종 공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교통기동대 1개 제대만 지원할 테니까 공문도 그렇게 올려라 해서 공문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로 해서 올라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치안대책 보고서는 유선상으로 협의하다가 끝에 교통기동대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다 이 얘기예요?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그러면 일반기동대 얼마나 지원을, 몇 개 중대로 요청했어요?

○증인 이임재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1개 기동대가 필요하면 3개 기동대를 요청해라 그 지론이 항상 제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 기동대 이상은 요청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3개 기동대 정도로 넉넉하게 요청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

○증인 이임재 예, 항상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리고 직원은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증인 이임재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조응천 위원 여러 차례 거절됐고, 그 이유는 10월 29일 당시 서울시내 집회·시위 상황으로 경력이 지원 곤란하다 또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서울청장님이 직접 판단한 거다, 결심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포기했다 이런 얘가지요, 아까 말씀이?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용산서의 담당 직원 이름이 됩니까?

○증인 이임재 실무팀장, 112관리팀장입니다.

○조응천 위원 112관리팀장?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서울청에다가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다?

○증인 이임재 그렇게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조응천 위원 서울청은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기동대 배치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증인 이임재 그 부분은……

○조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헬러원 행사 때는 기동대 3개 중대 180여명 배치됐다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용산서에는 다년간 헬러원 경협이 있는 정보·경비·순방 파트 직원들이 다수입니다. 맞지요?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이태원파출소 본부 경찰관이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참사 나흘 전에 이태원파출소장이 서울청 등 상부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 그런데 답을 듣지 못했다’ 이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파출소장이 직접 서울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때 제가 듣기로는 서울청 감찰에서 헬러원 축제 대비 상황을 점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직접 파출소장이 그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조응천 위원 서울청 감찰에다가 직접 얘기를 했다?

감찰 누군지 얘기……

○증인 이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파출소장이 서울청 감찰한테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증인 이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은 29일 참사 당일 날 삼각지역 부근에서 집회 관리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당시 일대에는 9개의 기동대가 투입됐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증인 이임재 ……

○조응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8시 반경에 집회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1기동대는 8시 40분부터 용산 거점에서 근무 중이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 기동대가 참사현장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임재 증인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조응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더 따져 보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뒷산 저수지 둑이 평소부터 굉장히 부실한데 역대급으로 비가 내린다는 호우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한 둑을 미리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비가 엄청 내릴 때 둑이 이상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쫓아가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둑이 터진 다음에 물이 막 홍수가 나면 사람들을 현장에서 구해야 됩니다.

어느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인가, 지금 정부와 특수본은 둑 터진 다음에 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실한 둑을 미리 보완하지 않은 그 잘못이 가장 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조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이임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엇그저께 고인이 되신 정보계장 조문을 갔더니 그 파님께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아주 아픈 가슴을, 슬픔을 나누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고인이 되신 분들께도 명복을 빌지만 저희 동료 직원께도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청 112, 현직에 있을 때도 관장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대강의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권역부터 5권역까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임재 112상황실……

○임호선 위원 잘 모르십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용산경찰서에 코드 1부터 2·3까지는 112, 용산서로 지령이 되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증인께서는 집회·시위 상황이 끝나고, 지금 많은 언론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그 짧은 거리를, 걸어서 10분인데 차로 몇십 분 걸려서 이동을 했냐…… 그 몇 분, 몇십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증인께서 청취하시거나, 아니면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복된 112 신고가 계속 코드 0부터 1·2·3로 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어야지요.

인지를 못 하고 계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죄송하지만 제가 식사 후에 차에 탄 순간부터 자서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서망에서는 인지할 수 있는 특별한 무전 교신이 없었고 아주 평온한 무전이 계속 일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11건, 저희들이 녹취록 확인한 바로는 압사라고 하는 표현이 다섯 번씩이나 반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상황실에서든 증인께 당연히 유무

선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증인 이임재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차로 이동했느냐 걸어서 10분 거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증인 이임재 그 부분은 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고요.

○증인 이임재 예, 죄송합니다.

○임호선 위원 필요하다면 이건 증인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112 시스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다시 한번 강조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서장으로서 23시에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인들과 유족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대처 부분에 있어서도 파출소 옥상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증인 이임재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다중이 연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전체 군중의 흐름과 경력 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면서 지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옥상에서 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임호선 위원 전 직원들 비상소집은 따로 그 전에 안 하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때 당시 제 판단으로는 이미 주말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관 직원을 부르기에는 그 시간대에는 차를 가져와야 되고 오히려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골든타임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근접해 있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집무실을 경비하는 11기동대가 용산 타격대입니다.

그래서 즉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용산 타격대 출동 지시를 내렸고, 그다음에 인파들을 차도 쪽으로 해산하는 그런 지시 그리고 서울청에 즉시 출동 가능한 2 기동대 이상을 즉시 지원토록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5개 중대가 동원된 걸 시간대별로 파악을 다 해 봤는데요. 출동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임호선 위원 너무 늦었고 경찰이 대응하기에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났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임호선 위원 류미진 증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청 112가 생활안전부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증인 류미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뭐냐 하면 상황관리관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112 대응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특히 주말 근무 두 달에 한 번 정도씩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상황팀장이 그 부분을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나 미진했다 하는 말씀을 저는 꼭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류미진 증인뿐만 아니라 경찰청, 서울청, 전국적으로 112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청장께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서울청 112 상황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류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오늘 이임재 증인, 류미진 증인 이렇게 두 분 참석을 하셨는데 왜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그날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런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봉민 위원 류미진 증인.

○증인 류미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봉민 위원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셨느냐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더 빠른 조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두 분 모두가 행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감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예.

○전봉민 위원 이임재 증인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시간대.

(영상자료를 보며)

집회가 8시 25분에 끝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도착한 걸 보면 9시 24분이에요.

○증인 이임재 그런데 저희는 또 별도로, 그때 진보·보수 맞대응 집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상황 관리한 게 21시 20분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마치시고 그 이후에 식사를 가셨단 말이지요?

○증인 이임재 그렇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런데 좀 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헬러윈 축제를 하는 것 두 분 다 알고 계셨지요?

○증인 이임재 예.

○전봉민 위원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증인 이임재 예.

○전봉민 위원 기동대도 요청했다고 했지요? 서울……

○증인 이임재 예.

○전봉민 위원 그런데 서장님은 그날 그렇게 여유로웠습니까?

○증인 이임재 ……

○전봉민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느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더 빠른 조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 이 사건을 보면 6시 34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던 말이지요.

○증인 이임재 정말 죄송스럽……

○전봉민 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동대가 대통령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출동을 다 해서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동대는 8시 25분에 집회를 마치고 남아 있었어요. 여기 계신 서장님께서 조금만 빨리 기동대를 요청했어도……

기동대 요청을 몇 번 하셨어요?

○증인 이임재 사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봉민 위원 아니요, 마지막, 사건에 도착해서 가지고.

○증인 이임재 일단 용산 타격대로는, 대통령집무실 경비부대가 용산 타격대입니다. 그 부대를 즉시 출동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청에……

○전봉민 위원 몇 시에 했어요?

○증인 이임재 그게 제 기억으로는 23시 12분경으로 기억합니다.

○전봉민 위원 17분 아십니까?

○증인 이임재 일단 처음 경무과장을 찾은 게 12분경입니다.

○전봉민 위원 결국 11시 40분쯤 도착했지요?

○증인 이임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셨다고 하시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그냥 보고를 받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차량에 타고 계셨으면서도 무전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용산서 직원들이 일부 나가 계셨잖아요.

○증인 이임재 예, 그래서 저도 중간에 상황실에도 한 번씩 전화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러나 특이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전봉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인 이임재 수시로 계속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봉민 위원 류미진 총경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상황실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매뉴얼 알고 계시지요?

○증인 류미진 예.

○전봉민 위원 선조치 후보고 해도 관계없는 곳이지요?

○증인 류미진 예, 선조치 후보고 알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맞지요?

그런데 아침부터 출근해서 가지고, 출근할 때 상황실에 들렀다가 순시라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증인 류미진 죄송합니다.

○전봉민 위원 혼자 계셨습니까?

○증인 류미진 사무실에서 상황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봉민 위원 집무실에 혼자 계셨습니까?

○증인 류미진 제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전봉민 위원 식사도 혼자 했습니까?

○증인 류미진 식사는 저녁에만 잠깐 나가서 먹고 왔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혼자 계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관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위에 계시는 분이면 어디 잠시 밑에 내려가서 상황이 어땠는지 보고 오는 게 관행 아닙니까?

류미진 증인님.

○증인 류미진 죄송합니다.

○전봉민 위원 그게 관행 아닙니까?

대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씩은 내려가서 순시를 하는 게 관행 아닙니까? 그게 관행이지요.

○위원장 이채익 증인 여러분들, 위원의 신문에 답변을 하세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꼭 답변을 하세요.

○증인 류미진 죄송합니다.

○전봉민 위원 ‘죄송합니다’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증인께서는 서울중부경찰서의 서장으로 계셨지요?

○증인 류미진 예, 맞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증인 류미진 ……

○전봉민 위원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증인 류미진 제가 112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봉민 위원 112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찰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 말씀이에요.

○증인 류미진 예, 경찰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혼자서 뭐 하셨습니까?

○증인 류미진 사무실에서 그냥 상황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봉민 위원 두 분 상황대기하셨다, 보고를 늦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대답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요. 왜 자꾸 피해 가는 말씀을 하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증인 두 분께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발언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전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그날 10월 29일 날 어떻게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죄송합니다’는 서두에 ‘죄송합니다’ 한 번으로 하고 답변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줍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출신 송재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답변을 마지막에 간단히 ‘예, 아니오’ 또는 ‘대체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증인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그래서 기동대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나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 작동되는, 그 보고체계라든가 재난관리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고체계도 다 만들어 놓고 잘 작동되던 체계가 그날에만 왜 작동을 안 했을까, 이렇게.

저는 특별한 무언가가 그날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약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마약과의 전쟁을 이야기했고 검경 수장이 다 앞서서, 앞다투어 마약단속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용산서, 헬러윈 데이가 열리는 이태원이 마약이 널리 이렇게 되는 이런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어서 용산서에 서울경찰청이 마약단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또 실제 회의를 했고 올린

첫 보고서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장이 용산서장에게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좀 강화된 계획을 내라’고 했고, 추가된 경찰병력 투입안을 또 제출했고 또 다른 장소의 홍대는 아예 경찰병력을 보내지 않았고 이태원에 집중했어요.

저는 어떤 일상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해서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고 경호경비를 하고…… 그렇잖아요. 안전관리를, 이런 일상적인 것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하던 일인데 이 특별한 마약단속이라는 초점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여러 개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용산서장이 놓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유능한 서장께서, 평생을 경찰에 복무하면서 해 온 분이 이걸 놓칠 수 없잖아요, 기동대 요청까지 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서울경찰청장에게 지난번 현안질의 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 답변이 ‘마약단속에 주안점을 둔 게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서술 과정에 대해서 이임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서울청에서 마약 예방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용산서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인파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동시에 하려고 했었고 했었습니다. 형사들에게도 형광 점퍼를 입혀서 가시적으로 인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이임재 증인, 앞에서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기동대를 배치할 수 없다는 서울경찰청을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천준호 위원 몇 번 요청했습니까?

○증인 이임재 횡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두 번 이상입니까?

○증인 이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두 번 이상으

로 알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일 날 이태원 헬러원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앞서 증인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천준호 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가 서울경찰청 정보과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추후에 알았습니다.

○천준호 위원 통상적으로 용산서 정보과가 정보 보고를 하면 서울경찰청 정보과는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용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그 위험보고서에 대해서 서울청 정보과가 점수까지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제가 그런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시다.

서울경찰청에 보고가 되었다면 서울경찰청장에 게도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듯 서울경찰청은 당일 위험상황이 되어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수차례에 걸친 기동대 파견 요청에도 기동대를 파견하는 대신에 서울경찰청은 29일은 경비계획으로 집무실 절대안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맞습니까, 공문으로? 그렇게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집무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천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번에 본인이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마약류 집중단속까지 지시하고 그와 관련된 공문도 용산서에 보냈는데 그건 받으신 적 있지요?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많은 인파에 대비한 경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

까, 헬러원 축제와 관련해서?

○증인 이임재 저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안전관리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사전에 서울청장님으로부터 헬러원 축제를 철저히 잘 대비하라 이런 지시는 두세 번 정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신문 다 했습니까?

○천준호 위원 예.

○위원장 이채익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이임재 증인.

○증인 이임재 예.

○이만희 위원 류미진 증인.

○증인 류미진 예.

○이만희 위원 너무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 이임재 증인이 23시에 최초로 상황을 인지하셨다고 하셨는데 사고 발생은 22시 15분입니다. 벌써 사고 나고 난 다음에도 거의 45분이 흐른 시간에 인지하신 거지요.

그 현장에 적어도 과장급 이상의 간부가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거기에?

○증인 이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112상황실장, 여성청소년과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지휘관급 과장들이 적어도 네 사람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서장한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도 전화를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류미진 증인.

○증인 류미진 예.

○이만희 위원 상황실을 비우는 것이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경찰국 만들 때? 치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이고 세계 최고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찰이고

누구의 간섭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장관한테는 이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단 한 차례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임재 증인.

○증인 이임재 예.

○이만희 위원 도대체 23시 36분 서울청장한테 전화보고한 것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이임재 증인은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그다음 날 아침 10시가 될 때까지.

○증인 이임재 아닙니다. 그날 옥상에서 계속 현장 응급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무전 녹취록에 다 나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23시 36분 이후에도 계속 이태원과출소 옥상에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이임재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침까지?

○증인 이임재 그날 5시에 저희가 이태원과출소 2층에서 과장들하고 현장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시 이후까지 이태원과출소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심폐소생술하는 그 현장에 한 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증인 이임재 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 30분경에는 소방긴급통제단 합동기관회의 때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다시 올라가서 지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21시 57분경에 녹사평역에 도착을 합니다. 23시 5분까지 이태원과출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임재 예.

○이만희 위원 그사이에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니신 거예요, 1시간도 넘게?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증인 이임재 맞습니다. 그날 어떤……

○이만희 위원 경리단길도 갔다가 순천향 쪽으로도 갔다가 마지막 접근이 안 돼서 앤틱 거리로 왔다 이 얘기입니까?

○증인 이임재 보광동 쪽,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계속 차를 타고 한 70분간을 돌아다니신 거네요?

○증인 이임재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무전이나 모든 통신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휘차량인데 현장의 상황을 그렇게 몰랐습니까?

○증인 이임재 무전으로 들었고 중간에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했고 또 중간에 현장관리하고 있는 112상황실장에게도 전화했고 또 중간에 교통과장하고 통화……

○이만희 위원 그래도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정말 죄송스럽고 참담하지만……

○이만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계시는 이임재 증인이 조금만 더 기민하게 상황의 중요성을 알고 대비를 했다면 아니면 대처를 했다면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상황에 있는, 현지에 있는 과장들이나 이런 지휘관들한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길을 막고 퇴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증인 이임재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이만희 위원 그 현장에 계시는 경정급 과장 네 분은 뭐 하신 겁니까, 도대체?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서도 현장 지휘관은 목이 터져라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닙니까? 현장 경찰관들한테 어떻게 경찰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휘관급 과장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이만희 위원 이임재 증인.

○증인 이임재 예.

○이만희 위원 기본이 다 무너진 거예요. 보고 체계도 무너지고 현장 대처능력도 무너지고 당직실을 내가 한참 비워도 그 자체를 관행이라고 여기는, 경찰의 기본이 다 무너진 겁니다. 경찰 지휘부의 기강이 다 무너진 거예요.

현장 지휘관들이 아무리 노력해 봤자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임재 증인.

○증인 이임재 예.

○이만희 위원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 수차례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단 한 번이라도 지휘관으로서 서울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있어서 교기대가 아니라 기동대 병력이 필요하니까, 경력 요청을 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이임재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했습니까?

○증인 이임재 두 번이나 청장님 검토가 끝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희 위원 이임재 증인, 증인은 지휘관입니다. 용산이라는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헬터원과 관련해서 경비대 혼잡 대책을 세워야 되는 지휘관입니다. 서울청장한테 얼마든지 지휘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대 요청을 누구한테 지시했습니까?

○증인 이임재 실무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실무자 누구입니까?

○증인 이임재 112상황실장과 112관리팀장입니다.

○이만희 위원 112상황팀장 정 모 경감입니다. 맞지요?

○증인 이임재 예.

○이만희 위원 제가 이 내용 자료로 받았습다.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과 관련해서 공문을 포함해 가지고 의견을 피력한 게 뭐냐? 두 차례 있어요. 지원팀장은 한 차례. 이게 정식 공문이 아니라 그냥 메시지처럼 보내는 겁니다. 맞지요?

○증인 이임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보내는 겁니다, 교통기동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태원과출소 파출소장이 10월 25일 날 감찰 기능을 통해서 교통기동대가 필요하다……

무슨 근거로 지휘관이 수차례 일반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증인 이임재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시했고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서울청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내용은 잘못된 겁니까?

○증인 이임재 그 부분은 아마 최종 보고서를, 보내진 공문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증인 이임재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무너진 경찰 지휘부들의 기본을 우리가 어떻게 되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자리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돌아가신 여러 희생자들, 부상자들, 그 유족과 가족들한테 여러분의 죄스러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만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신문을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1호에 보면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알고 있지요?

○증인 이임재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미진 예.

○위원장 이채익 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를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경찰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임재 증인, 류미진 증인 두 분을 보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신문을 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했다면……

오늘 현재 중대본의,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집계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사망하신,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158명, 부상자가 총 196명, 아직도 정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중상자가 31명, 경상자가 165명, 총 354명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치안이 정말 잘돼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호홉하고 숨 쉬고 보행하고 잠자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임재 증인, 이임재 증인은 서울 수서경찰서 보안과장도 했지요?

○증인 이임재 수서경찰서 경비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서울 수서경찰서 보안과장 안 했어요?

○증인 이임재 보안과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지도관은 했습니까?

○증인 이임재 예.

○위원장 이채익 전남청의 구례서장도 했지요?

○증인 이임재 예.

○위원장 이채익 용산서장 오시기 전에는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했지요?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류미진 증인은 전남청의 여성청소년과장 했지요?

○증인 류미진 예.

○위원장 이채익 함평서장 했지요?

○증인 류미진 예.

○위원장 이채익 서울청의 중부서장 했지요?

○증인 류미진 예.

○위원장 이채익 지금 서울청의 인사교육과장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증인 류미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제가 여러분들 프로필을 보면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걸은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민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 배신 아니냐?

이임재 총경의 그날 행적을 보면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29일 용산 일대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에 밤 9시 24분쯤 식사하기 위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경비과장, 직원들과 함께 설령탕 집에 왔지요?

○증인 이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20여 분 식사를 했다는데 이 설령탕집과 이태원 해밀톤 호텔 사고현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이임재 정확하게는 한 3~4km나 4~5km 될 걸로 예상됩니다. 3~4km 같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4~5km 근방에 있으면서…… 그날 당일 저녁 6시 반부터 아미규환, 압사, 여러 가지 신고가 나는데도 당해 치안의 총책임자가 전연 보고를 받지 못했다, 또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아미규환인데 4~5km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이 현장 목도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증인 이임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죄송하다고 이 일이 해소될 일

이에요? 저는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 본 위원장도 8년 동안 일선 단체장을 해 봤지만 8년 동안 진짜 여름에는 물난리, 겨울에는 불난리, 지역에 한 치의……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라는 각오로, 8년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어떻게 치안을 책임지는 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류미진 증인에게서도…… 저는 이번 일을 목도하면서, 현장을 여러 번 둘러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류미진 증인은 사고 당시에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임명됐어요. 일일 임명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류미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 아니라 10월 29일 그날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상황관리관 업무가 아니고 인사교육과장 업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도 전부 다 모른다, 죄송하다…… 오늘의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그럴 국민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군인이 최전방 초소를 지킬 때 내 지역이 마지막 지지선이다, 내 지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그런 각오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임재 증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이임재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3시에야 그 상황을 알았다는 자체가 경찰서장으로서 정말 처참하고, 고인과 유족들께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분을 신문하면서 과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이임재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채익 예.

○증인 이임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장으로서는 정말 고인과 유족들께 뭐라, 제가 사죄든 뭐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고 경찰서장으로서 그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은 평생 안

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용산경찰서 서장으로서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을 맞이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애절하게 제발 살려 달라고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그리고 보고를 하겠다는 경찰관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 경찰서장의 책임입니다.

그날 우리 용산서 직원들은 한 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손이 덜덜 떨리도록 구출해 내고 근무복이 흠뻑 땀에 젖을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 용산서 현장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비난과 질책은 대신 저에게, 현장 지휘관인 경찰서장인 저에게 다 해 주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그날 보고체제라든지 정말 미흡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류미진 증인, 마지막 발언할 거 있습니까?

○증인 류미진 제가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에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성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추가질의 하면 안 됩니까? 시간을 빼면 되잖아요. 1분 뺄게요, 추가질의에서.

○위원장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오늘 우리가 여야 간사님들하고 합의된 대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참사 희생자 모두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우리 전 위원님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사건의 규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채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등 기관 참석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관 참석자에 대한 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증인신문을 전혀 실시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별도의 주질의를 실시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시간이 남으신 위원님의 추가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에 합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PPT 준비가 아직 안 돼서요.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7분 주질의 다 하신 분들은 못 합니까?

○위원장 이채익 그것은 5분.

○김교흥 위원 5분 할 수 있지요.

○이형석 위원 그건 보충질의 때 해야지요.

○조은희 위원 보충질의 때, 주질의가 돌아가야 되니까.

○김교흥 위원 그런데 윤희근 청장님, 몸 괜찮으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이형석 위원 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를 출신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의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은 행안부장관이 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형석 위원 이런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신 장관이 외국인 26명을 포함해서 158명의 희생자가 난 이태원 10·29 참사 관련해서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품 나는 사표입니까, 사표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국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품 나는 사표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 표현을 말씀……

○이형석 위원 기자하고 문자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문자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요 그 의미는 책임 있어 보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제가 이미 국민 여러분께……

○이형석 위원 장관님, 지금 이렇게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면서도 또 이런 발언을 하세요.

장관님, 지난번 10·29 참사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현안질의 할 때 제가 장관님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 행안부장관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6월 27일 행안부장관님 발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발언을 보시면 ‘행안부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안부의 공식적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홍보용 유튜브.

그거 한번 봐 보시지요.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관님, 참사 이전에는 국어를 좀 할 줄 아셨는데 참사 이후에는 국어 못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형석 위원 이 발언 이렇게 하신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리고 자꾸 ‘민주당에서 치안 사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지휘 감독권이 없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치안 사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휘 감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월 26일 행안부장관 발언 봐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도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휘규칙을 만드시면서, 지휘규칙이 8월 2일 시행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럴 겁니다.

○이형석 위원 일주일 전에 업무브리핑 하시는 겁니다. 지휘규칙을 만드시면서 굳이 경찰국에 치안 사무를 넘지 않아도 이걸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국어 할 줄 아시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럼요.

○이형석 위원 그런데 왜 지휘 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휘 감독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브리핑하신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형석 위원 국민들께 제가 확인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여기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형석 위원 장관님, 최근에 소방공무원노조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형석 위원 왜 고발했다고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제 또 똑같은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마음이 오죽

했으면 이렇게 하실까 해서 정말 저 자신도 침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형석 위원 소방노조가 장관을 고발하면서 ‘참사 당일 장관의 타임라인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10·29 참사 첫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1시 20분이었을 겁니다.

○이형석 위원 당시 11시 20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형석 위원 대통령께서 보고받은 게 11시 1분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마 그 정도 되셨을 겁니다.

○이형석 위원 대통령께서 11시 1분에 보고를 받고 장관이 10여 분 뒤에 보고를 받는 이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온당합니까?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잘못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쨌든 이번에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잘못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형석 위원 대통령께서 11시 1분에 보고를 받고 ‘행안부장관을 중심으로 대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 시간에, 11시 19분에 보고받으실 때 어디에 계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집에 있었습니다.

○이형석 위원 집에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정한 다음에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11시 20분에 보고받은 이후예요?

○이형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일단 보고받은 이후에 핸드폰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터넷을 좀 봤고요. 약 10분 후에 상황관이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상황실에 모든 상황을 전파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즉시 시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형석 위원 국무총리께는 보고 안 하셨습니

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국무총리께는 따로 연락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 국무총리는 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라인에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마 3단계, 4단계에 장관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형석 위원 대통령이 먼저 보고받고 장관이 보고받는 것 또 장관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 이게 전체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난국이지요, 이 정부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래서 보고 자체는 제가 대통령이나 총리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고 아마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리님께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는.

○이형석 위원 보충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오영환 위원 혹시 조삼모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경찰을 직접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무리하게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 강행할 때는 장관에게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참사 발생하고 모든 책임이 경찰을 통해서 본인에게로 향할 것 같으니 이제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 모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의 뻔뻔한 태도라는 점 분명히 개탄스럽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민 여러분이 보고 계실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듣고 계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환 위원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NDMS가 뭔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NDMS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뭘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재난안전 총괄시스템입니다.

○오영환 위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2005년 도입됐고요. 행안부, 모든 정부부처와 소방·경찰이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맞습니다.

○오영환 위원 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 재난 전파가 35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었다, 행안부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홍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대표적인 성과로 재난안전 포털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NDMS를 통해서, 이번 참사에서 각 정부부처에 이것 사용해서 통보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밤 12시 26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약 2시간 뒤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온 이후에 약 1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동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대통령 지시가 언론에 전파됐으니 NDMS를 통해서 시급하게 전파할 필요가 없다, 이것 행정안전부장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영환 위원 아니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오영환 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냈다는 취지이지……

○오영환 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라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보면 재난 상황에서 대응 지시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이

NDMS 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 원칙 적용도 사후에 장관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오영환 위원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모든 관계부처·기관에 신속한 구급치료 이루어지게 해라’, 모든 지자체, 소방·보건의료 당국, 경찰 모두에게 전파돼야 되는 내용인데 TV로 언론 보도가 됐으니, 그러면 이 각급 기관들이 TV를 보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접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인 주장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게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담당자가 판단을 한 건데요.

○오영환 위원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TV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 NDMS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영환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마지막에 해명하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시지요.

○오영환 위원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이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재난문자 발송보다 못한 취급 받은 겁니다.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김성호 본부장 뒤에 계세요? 해명이랍시고 우선으로 별도 전달받은 내용 정리해서 이 NDMS 전파 문건에 추가하느라 발송이 늦었다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추가한 내용이 없어요. 대통령 지시사항 복사·붙여넣기 해서 발송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린 겁니다. 이것 언론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해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난 현안질의에서 우선으로 무슨 지시 같은 걸 하고 재난안전비서관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법에 명시돼 있는 재난관리 총괄·조정 임무를 재난관리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떤 구체적 역할을 했는지, 어떤 내용의 구체적 지시를 전달했는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영환 위원 납득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이 멸절된 NDMS 시스템 또 법에 규정된 이런 재난대응체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장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아십니까? 특수본 수사 받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영환 위원 장관께서 ‘누군들 품 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나’ 이런 발언으로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을 참 충격 속에 몰아넣는 동안 이 서장은, 밤새 구조작업하고 지휘하고 손 떨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던 이 서장 혼자, 그 거리에서 혼자서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다 하던 사람은 더 많은 사람 구해내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통탄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장의 그런 태도 보면서 장관 느끼는 것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 심정을 함께합니다.

○오영환 위원 장관님, 마지막에 말씀 주세요.

이런 참사 방지 위해서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TF를 이제 개편한다는데요.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나 그러려는 관심이나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보여 주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께서, 이렇게 멸절된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킨, 지탄받고 있는 이런 장관께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범정부, 국가적으로 개편하는 TF의 단장을 맡는다는 게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본인께서 고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영환 위원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 거냐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영환 위원 지금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국민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래서 더욱더 열

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장관님, 제가 언론에 나온 한마디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전력으로 책임에서 달아나는 동안 헌신했던 이들은 모욕을 당할지언정 책임에서 달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후자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전자는 누구인지 장관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채익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그대로 반사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께서 지난 6월 행안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그 무산된 것이, PPT 화면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에서 행안부장관을 지내신 전해철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행안부는 치안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게 되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다,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못 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왜 지휘를 안 했냐 하고 책임지라 그러니까.

○오영환 위원 언제 야당 말을 들었어요?

○조은희 위원 이것이야말로 조삼모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환 위원 언제 그렇게 야당 말을 들었냐고.

○장제원 위원 아, 발언할 때 좀 이러지 맙시다, 정말.

○오영환 위원 제 이름을 거론하셨어요.

○장제원 위원 발언 시간에 하세요.

○조은희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장제원 위원 아, 너무하네, 정말.

○이성만 위원 아니, 당사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얘기하니까.

○장제원 위원 당사자는 그러면 시간 아낄 때 하면 됩니까?

○이성만 위원 아니, 이름을 얘기하니까 당사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제원 위원 아, 정말, 이런 식으로 발언을 끊으면서까지 문제를 삼습니까?

○위원장 이채익 자, 자.

○이성만 위원 아니, 이름을 얘기 안 했으면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위원장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장제원 위원 한두 번이예요?

○이성만 위원 개입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저더 못 하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장제원 위원 아, 정말, 더 이상 못 해 먹겠네. 발언할 때마다 끼어들니까?

○오영환 위원 이만희 간사님께서도 그랬어요, 아까.

○장제원 위원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문진석 위원 똑같은 피장파장이예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 실명을 거론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제원 위원 실명을 거론하면 본인이 발언권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응천 위원 아니, 대변인이예요?

○오영환 위원 언제부터 여당께서 그러셨어요?

○이만희 위원 왜 그러세요, 진짜로.

○김교흥 위원 아니, 본인들이 먼저 했잖아.

○이성만 위원 먼저 개입하니까 나도 개입한 거예요.

○위원장 이채익 여야 위원님 여러분!

○장제원 위원 아, 정말, 회의를 뭐 이렇게 합니까?

○이성만 위원 제가 할 말입니다, 제가 할 말.

○문진석 위원 우리가 할 말이야, 우리가.

○장제원 위원 아니, 발언 내용 가지고 문제 삼으려면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이성만 위원 아니, 사람 이름을 대잖아요.

○장제원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고, 신상발언을! 신상발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상발언!

○문진석 위원 아니, 원래 위원 이름 거론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장제원 위원 언제요?

○김교흥 위원 본인이 얘기했잖아, 본인이.

○문진석 위원 장제원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장제원 위원 언급이 되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란 말이에요.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발언할 때 상대 위원의 이름은 안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이채익 여야 위원님 여러분, 발언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전해철 전 장관께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성 측면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니까 ‘장관, 네가 잘못했지 않냐’ 그리고 우르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지휘를 안 했냐, 왜 아무런 역할도 못 했냐’ 이것이야말로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반사, 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내년 경찰국 예산에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그냥 짝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잘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경찰국 예산 뺄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을 하려니까 못 하게 하고, 못 하게 해 놓고 일이 터지니까 ‘네가 잘못했지 않냐’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예산 안 쥐’,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조은희 위원 유가족에 대한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만 알고 있을 명단인데 어떻게 인터넷 매체—민들레라는 데 또 더탐사—에 가서 그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까지 가고 이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또 천주교계 일부에서는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의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의 동의와 유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부분 그다음에 유출 경위 두 가지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고요. 법리 검토……

○조은희 위원 수사를 합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지금 벌써……

○조은희 위원 언제부터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

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고발이 접수가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빨리 수사를 시작해서서, 이게 또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단 공개와 민주당과의 협업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단 공개한 단체와 민주당과의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것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님이 어제 올린 글입니다. ‘민주연구원 이연희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당 전략기획위원장이지요—보낸 문자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 이후 특정 매체에 의해 공개되었고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민주당 의원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일 행안위 국감에서요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행안위원이신, 존경하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 위원장님께 보낸 문자가,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사진·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논의가 됐어요.

○**문진석 위원** 무슨 논의가 됐어요!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진짜……

○**문진석 위원** 내 얘기 하고 있잖아.

○**조은희 위원** 그리고……

○**문진석 위원**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제발.

○**조은희 위원** 9일 날 아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라’ 하고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변인이신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협업을 했다고 밝힌 인터넷 더탐사와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 그리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삼각 티키타카가 이루어집니다. 스리 쿠션(three cushion)인 거지요.

그래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던 날 민주당은 일부 유가족과 비공개 회동을 했고 착착 진행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추모 미사를 한다며 광화문에서 희생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처럼회 등 민주당 일부에서는 다음 단계로 유족 의사와 상관없이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군불을 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협업 여부에 대해서, 명단 공개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선에서 개입했는지 어떤 협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말씀드린 대로 서울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신속하게 진행할 거고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그 과정에 아마 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협업관계도 확인된다는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다 포함돼서 수사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조은희 위원** 수사를 아주 똑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아마……

○**조은희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경우예요 이제는 허위사실로 드러난 채널A 유착 보도를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칼럼진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PT 화면을 보시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문성근 영화배우가 홍보를 하면서 후원 모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성근 씨가 과거 홍보를 했던 단체를 보면 매체의 신뢰도에 좀 의문이 가요. 문성근 씨는 2015년에 다단계 사기 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해서 집단지성 운운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투자자들을 속여서 무려 1조 원대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이런 집단사기업체를 홍보했던 분이 또다시 후원을 독려하는 매체가 민들레고요.

또 이 민들레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최배근—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제 책사—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 매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기관지적 성격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품게 돼요.

○이성만 위원 말조심하세요.

○조은희 위원 이런 곳에서 반인권적 2차 가해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민들레는 현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들레가 위법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수사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폭넓게,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추모는 힘겨운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에 퍼트리고 고통과 슬픔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작 명단 공개의 공도의 중심에 있던 더탐사에서는 희생자 명단을 유튜브에서 공개한 후에 뒤에 영상화면으로는, 희생자 이름이 호명되는 영상화면이 백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맛있다면서 떡볶이 광고용 먹방을 합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유가족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 위원님들……

○이해식 위원 아니, 정당을 싸잡아서 말이야, 그렇게 음모론을 퍼트린 게 잘한 일입니까?

○장제원 위원 잘했어요.

○위원장 이채익 이해식 위원님.

○이성만 위원 존중하고 삽시다.

○위원장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제발요.

위원장이 여야 위원님들께 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당의 위원님이 발언하시든 일단 다 들어주세요. 반박은 듣고 나서 국회방송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반박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이 발언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성만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잠깐만 주십시오. 1분 내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채익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수준 높은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성만 위원 1분만 얘기할게요.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을 1분 하는데요?

○이성만 위원 아니, 이게 당사자가 있는 그 사실을 직접 얘기를 하면……

○박성민 위원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발언권 받아서.

○이성만 위원 당사자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듣지요. 이것을 당사자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음해하는 얘기를 하면 민주당 입장을 얘기하게 만들고……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멈춰 주세요. 왜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하게 합니까?

○이성만 위원 여기에 참석해 있는 개인 위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개인 위원이 답변하게 해줘야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니까 중간에 얘기가 개입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채익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똑같이 2 대 2, 3 대 3 나눠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방금 조은희 위원님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으면 자기 발언시간대에 얼마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장님께 부락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상임위를 왜 열었지요? 현안질의를 왜 합니까? 뭔가 국민들한테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가지고 야당…… 파트너입니다. 상임위 파트너인 야당을 공격하고 이런 질의를 해대는데 그것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채익 예.

○문진석 위원 이게 기계적 중립이 아니고 제삼자 입장에서 보시면……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임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이 질의시간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한 적도 없는데 논의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민들레라는, 어느 인터넷 매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하고 협업했다고……

청장님, 민들레하고 민주당하고 협업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 동의하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적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의하지요, 당연히 동의하지.

○문진석 위원 좀 가만히 계세요. 제 질의시간입니다.

○김교흥 위원 가만히 좀 있어요.

○박성민 위원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또 가만히 있으라고……

○문진석 위원 내 질의시간이라고, 왜 질의시간에 그렇게 끼어 드셔 가지고 질의를 막아요.

○박성민 위원 하세요, 하세요.

○문진석 위원 국민의힘에서는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100%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이 참사를 정치화하고 있어요.

○박성민 위원 우리보고 묻는 말입니까?

○문진석 위원 제 질의시간이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쳐다보지 말라고, 왜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합니까?

○김교흥 위원 꼬치꼬치 얘기하지 말라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박성민 위원 나를 보고 하니까 그렇지.

○문진석 위원 행안부장관 불러서 우리가 행안부장관 감싸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 다 보고 계세요.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따져 보고 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질의시간 갖는 의미가 있지 행안부장관 옹호하고 ‘니들 야당이 행안부장관을 업무를 제대로 못 하게 했으니까 행안부장관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용산시대 맞이하는 용산경찰서, 인력 증원에도 여전히 우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십년간 종로경찰서가 담당했던 청와대 인근 치안이 용산서로 넘어오는데 용산서 업무 부담이 크다, 용산 인구가 종로보다

세 배나 많다, 그다음에 기존 치안 수요도 종로보다 훨씬 높는데 70여 명의 인력 증원으로는 부족하다, 민생 치안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이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청장님.

정부가 용산에 충분한 인력, 예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일단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면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당시 1단계로 76명을 증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말 또 내년 초가 되면, 만약에 그때 분석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주려고 사실 계획을 가지고 있던 단계입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보도 이후에도 추가조치가 없었다는 거지요.

76명인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76명을 저희가 증원했습니다.

○문진석 위원 76명이 조치가 됐지만 76명 조치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 정도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추가조치가 없었던 것 사실이잖아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요.

○문진석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렇기는 합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러니까 인력 증원 부분은 사실 연말 연초……

○문진석 위원 그런 식의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딱 정해 놓고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경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당연한데요. 그게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진석 위원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장관님께 제가 한번 여쭙어보려고 합니다.

경찰청장님하고 김광호 청장님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아무런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조치를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한테 여쭙어보시는 겁니까?

○문진석 위원 아니요,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인력 부분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여러 논의를 통해서 이제 1단계로 이 정도 인원을 증원한 겁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인력 증원하고도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5월 달에 인력조치를 했었는데 사고가 언제 터집니까? 5개월 후에 터지잖아요.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집회한 시민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문진석 위원 문제는 그런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잘못은 정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결과적으로 책임을 따지면서 그렇게 또 연관을 지으신다면……

○문진석 위원 그렇게 연관을 짓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었으면 문제없었겠지요. 그런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조치 안 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번 사고의 원인은 단정적으로 어느 하나라고만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문진석 위원 장관님,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경찰 업무가 부담이 크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 한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에서요?

○문진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님이나 총리에게 이걸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진석 위원 장관님, 지난 8월 2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이렇게 출범시키면서 ‘경찰국을 통해서 행안부장관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하겠다, 경찰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기억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문진석 위원 그런데 경찰의 그런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 안 받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보고는 저한테 오지 않고요. 다만 전체적인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조직 변경·신설 그런 것은 옳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면 누구나 예측하고 언론도 예측하는 것을, 장관님은 그런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집무실 이전하면 용산서의 업무 부담이 커지겠구나, 경찰의 인력이 더 필요하겠구나, 예산이 더 지원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 못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경찰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정부부처를 상대로 해서 그 부처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 조직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진석 위원 아니, 장관님은 경찰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처를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경찰 내부적인 조직이나……

○문진석 위원 아니, 일반 시민들도 알고 언론도 아는 것을 왜 장관이 모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진석 위원 자기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의 업무인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진석 위원 경찰의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요.

○문진석 위원 행안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처가 어디입니까? 경찰, 소방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별도의 청이지 않습니까.

○문진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별도의 소속청이지 않습니까.

○문진석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빈축을 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예산이나 조직이나 모든 게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따로 살림 나간 동생 집에 가서 제가 살림 살듯이 뭐 해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 TF 단장 맡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 그거 맡으시면 안 돼요. 책임자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장관님은 사실은 189일 되셨지요, 장관 되신 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날짜까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5월 12일 날 되셨으니까 189일이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문진석 위원 그런데 재난과 안전이 행안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재난안전 업무에 대해서 정말 식견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계신 분이예요. 그런 분이 다시 TF 팀장 맡으시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TF가?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 김교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장관님, 제가 며칠 전에 희생자 유가족 몇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규명해 달라 그리고 책임자 처벌해 달라 그리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우리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이 국민 속에 기억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 같다, 유가족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 같다……

실종신고를 하고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희생자를 찾는 데 하루가 넘게 걸렸어요. 주검이, 영안실을 찾는 데 5시간, 6시간 걸렸어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정

도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거나 정부의 이렇다할 설명이 없어요.

뭘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관님, 뭘 열심히 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도 유가족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

○김교홍 위원 아니, 공감을 하면 장관님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언제 어디서 사망했고 하물며 언제까지 살아 있었는지 유가족은 아무것도 몰라요. 서울 한복판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내 가족이 희생당했는가 그걸 규명할 못 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게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어제……

○김교홍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고 이틀 뒤에 유가족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치료비, 장례비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은 혈세 낭비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도 실제 유가족들 중에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부가 책임져야지 그분들이 자기가 뭘 잘못해서 사망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교홍 위원 미국이나 선진국들은요 피해자 비용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후 대책도 잘못됐어요, 장관님. 여러분들이 역지사지한다면 이렇게 하지를 않아.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행정을 펴니까?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행사를 곳곳에 다니면서 가서 고인을 추모하는 게 추모를 하는 겁니까?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는데 뭘 추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장관님이 절대로 이 일의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대통령까지 모셔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158명의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게 해서 국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진실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지적사항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교흥 위원 제가 애기한 대로 하실 의향이 있어요? 유가족들 다 모셔 놓고 정부는 뭘 잘못 했고 이런 걸 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생각 중에 있는데요.

○김교흥 위원 생각만 하면 뭐 합니까, 20일이 지났는데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뭐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아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유가족들의 입장이요……

○김교흥 위원 장관님, 잠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아까 무슨 유가족 이름이 밝혀졌는지 어땠는지……

장관님, 유가족이 정말 희생당한 내 아들딸들 이름을 밝히기 꺼려 한다면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정부가 온전하다면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빨리 정부가 움직여서 추모를 제대로 해야지요, 추모를. 그래야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참사나 이런 현상을 유지해야 우리 국민들이 그걸 뜨겁게 받아들여서, 또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유가족 이름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 어디 언론사에서 밝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을 만나고 유가족을 찾고 영정도 제대로 하고 위패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혼령들에 대해서 사죄도 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지 무슨 유가족의 이름을 흘렸니 나왔니 망자가 이름이 나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질이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대부분 지금 다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교흥 위원 맨날 검토하고 생각 중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2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치료비나 위로비는 금방 이틀 뒤에 해서 지불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중요한 본질의 것들은 20일이

지나는 동안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거는 감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위원님.

○김교흥 위원 감성적인 게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그거는 시기라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유가족들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대요. 자기들이 마치 죄인인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대요. 내가 그 추모하는 데 가서 현장에서 얘기 들어 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보세요. 현직 서울경찰청장 그대로 놔두고 하다 보니까 용산서 정보과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그 새중간에 낀 정보계장이 자살을 하잖아요.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되는 거지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진실규명을 합니까, 장관님.

158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저는 정말 답답해요, 장관님. 무슨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장관님도 책임이 있는 건, 본인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사후 대책의 TF 단장을 맡습니까? 이게 온전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들 그러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교흥 위원 왜들 그러십니까.

그리고 장관님 있잖아요, 자꾸만 경찰에 대해서 장관님이 ‘보고받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 공룡 경찰조직을 지휘 감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 어떻게 하셨어.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하고 거기 갔잖아요, 헬기 타고. 다 진두지휘했잖아요. 특공대까지 투입할까 이것까지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두지휘한 적은 없고요.

○김교흥 위원 특공대 투입하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소방과 경찰의 브레인 스토밍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경찰국 신설할 때 서장회의할 때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다 관계하고 계시고, 경찰국 만들어서 인사권은 갖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인사권 가진다는 게 뭐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권은 원래 있던 거고요, 위원님.

○**김교흥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권은 원래 있던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김교흥 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요.

○**김교흥 위원**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밑에 수하로 두고 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은 제 수하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관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60%가 장관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두세요. 그리고 훌훌 털어 버리고 사후의 책임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이게 사태의 본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후 대책도 세우고 합니까? 뭘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답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김교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출신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8명의 희생, 죽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개개인의 사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못 간 것도 아니고 선택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공감하듯이 분명하게 국가의 재난 예방과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생겨난,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 성격의 희생이라는 거지요, 공적 성격의. 그래서 정부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공적 성격이 아니면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공적 성격의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태원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엇그제 예결특위 과정에서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공적 성격의 죽음이라면’이지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사전에 정부가 배상할 수 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부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이 나라 법무장관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맞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과실 또는 고의와 법령의 위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장관님, 과실 또는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아래로부터 이야기하면 용산구청장, 용산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장관이 관련된 공무원인데 사실은 법령의 위반이라면 파면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장관께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이 발언을 해 가지고 사과도 하셨고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적절한 표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발언의 진의는 장관께서 ‘나도 책임을 통감한다, 나도 이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걸로 읽혀요, 이 발언의 진의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사실 그렇습니다. 뒷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호 위원** 여기서 제가 장관께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게, 책임을 지는 것하고 책임을 못 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책임을 지시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반려되거나 그게 회피되면 또 책임을 다할 기회가 있으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지요. 책임을 지는 것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같이 해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이것은 장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장관님께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장관님 어쨌든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 마련해야 되잖아요, 우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위원** 우리가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송재호 위원** 반드시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일어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재난 예방이나 위기관리시스템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고 어쨌든 잘 작동되는데 그날 이게 작동이 안 된 거다, 그러면 왜 작동이 안 됐는지, 무엇이 부족해서 이게 작동이 안 됐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거지요.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고 나면 어쨌든 많은 희생이 있었으니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사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대를 통해서 추모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송재호 위원** 그리고 역사 속에 그런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는 추모 사업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공감합니다.

○**송재호 위원** 그렇게 쪽 이어져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송재호 위원** 장관님,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특별법 같은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부 혼자서, 행안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 경찰청 혼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수사는 수사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 미진하면 특검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 저는 이 일을 하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충실히 따를 거고요.

그 밖에 말씀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대본도 매일 열리고 있고요. 저희 총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재호 위원** 저는 이런 일들을,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가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의정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은 희생자, 유족 그리고 국민 모두의 참여하에서 공론을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하는 게 맞는데 물론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가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국회도 그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꼭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정조사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면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산일되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진술을 바꿉니다. 그래서 진상 파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사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은. 저는 수사는 수사대로 해서 사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래서 말씀드린 바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면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리고 장관님, 이 이태원 참사는 용산 이태원에서만 일어난, 이태원의 주민들이, 이태원에 소속된 관청들이, 이태원이라는 구역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찌다가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공감합니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송재호 위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송재호 위원** 그러면 장관님, 이 이태원과 관련된 수사나 조사나 모든 관계된 것은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당연합니다.

○**송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박성민 위원** 이태원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얼마 전에 경찰청장님 집무실까지 압수수색 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장관님은 특별수사본부에 어떤 지휘나 조언이나 관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장할 수 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전 경찰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특별수사본부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엄중함과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을 지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158분의 국민들이 사망하고 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가 엄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저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도 보장하실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성민 위원** 장관님께서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징계할 수 없지요?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한 적도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다, 문제는 직속 상관들 지휘체계 라인에 대한 책임을 우선 묻는 게 맞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일차적인 책임.

○**박성민 위원**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장관님께 책임을 지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재난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몇몇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도 바쁜 와중에서 우리 당 이태원참사조사특위 위원을 맡아 달라는 소리에 두말 안 하고 맡아서 요즘 이래저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 역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온 국민이…… 이 참사에 책임 안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조사가 끝이 나고 장관님이나 청장님이나 지휘라인에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장관님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러나는 게 대수라면, 그게 유족이나 사망자나

정부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물러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박성민 위원 경찰청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연연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 자리는 저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가리고 그게 부족하면, 그게 국민들로부터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또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은 특별수사본부가 엄격하게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교홍 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유족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김교홍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동의하에……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사망하신 외국인 스물여섯 분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스물다섯 분은 명단 공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부 유족들도 명단 공개를 반대하고 있고 일부 가까이 있는 친구나 회사밖에 모르는데 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공개해서 안정이 돼 가고 있는 유족들을 아프게 슬픔에 빠지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정·위패를, 안타깝지만 공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태원 희생자 공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공개입니까, 유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명단이 나간 거요?

○박성민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는 공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박성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이성만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성만 위원 지난 12일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런 메시지를 기자한테 보내셨지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안부 문자가 와서 그에 대한 답으로 보냈습니다.

○이성만 위원 일부러 보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닙니다. 아는 기자가 먼저 안부를 물어 왔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게 실수라면, 말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문자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생각이 되고요 또 보내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낸 게 아니고 실수로 보낸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실수로 보낸 건 아니고요. 그 말의, 그 문장 전체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기자가 해당되는 문자를 공개해서 혹시 문제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 당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성만 위원 아니, 그런 기본적인 공감 능력도,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 장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기준 척도에는 맞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158명의 희생자가 있고 많은 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음을 풀지 못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의 지적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만 위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갖다가 뒤집어 해석을 해 보면 ‘나 사표 깨끗하게 던지고 싶어, 그런데 대통령

령이 나를 신임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어' 이 말 뜻으로 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전혀 아닙니다.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성만 위원** 책임의 무거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책임의 무거움을 갖고 얘기한 것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 바로 이어진 문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 그 단어를 '품 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성만 위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러나 이걸 해결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쨌든 부적절했음에 대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장관님께서 국민이 임명해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님께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적 의미는 국민이 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 볼게요.

행안부장관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답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국민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 충복이지요.

○**이성만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과 대통령이 의견을 달리할 때 장관은 국민을 따라야 됩니까, 대통령을 따라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당연히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요.

○**이성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사퇴 여부를 물어봤을 때 65%가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수습이 잘

되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70%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잘못 대응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는 누구냐, 대통령과 정부가 20%, 1등입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빠지지 않고 8%고요.

이 얘기는 됩니까? 두 가지겠지요.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장관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둘 중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썄, 국민들이 오해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이성만 위원** 그러시면 국민들의 마음이, 진실이 이거라면 앞서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정확히 이것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국민들의 뜻을……

○**이성만 위원** 이것 말 하나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고요.

저는 장관님이 '우리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후광으로 나는 장관직을 수행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누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만 위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현실의 상황을 대통령께 정확히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더 무겁게 생각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를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구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로 참사 18일이 지났습니다. 명백하게 국가 부채 상황에서 158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명이 다쳤고 지금도 31명이 뇌손상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한 사람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사의를

밝힌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것 아닙니까, 이것? 윤석열 정부 너무나 것 아니에요?

지난 11월 9일 날 KBS 여론조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이 잘못이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69.6%, ‘참사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73.8%입니다. 경질해야 될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뭘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법적인 책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상민 장관의 사임 요구 이것이 여당 내에서도 빗발치자 조문에 동행을 했습니다. 곧 잠잠해졌지요. 그리고 지난 11일 날 동남아 순방을 떠나시면서 장관님 왼쪽 팔을 툭 툭 치면서 신임을 표시했고……

오늘 새벽에 오셨지요, 대통령.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오늘 새벽에 도착 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 약수를 청하면서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행동거지가 모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거스르고 있어요. 지금 국민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장관님께도 좋지 않고 대통령께도 좋지 않고 국민께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재난안전 주무장관께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의 질의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이해식 위원 어떻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을 느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지난 현안질의 이후로 지금까지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대답하셨으니까, 한 적이 없다고.

하신 적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직접 구두로 말씀을 드렸느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워드 투 워드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의사는……

○이해식 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단 공개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해식 위원 법리 검토는 끝났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이체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해식 위원 그러면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 다 입건할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한국기자협회에 재난보도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9조에 신상공개 주의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신상을 공개하되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 공개는 하되, 그러나 피해자들의 인격권이나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요.

저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재난안전관리법에는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과 수습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선 구청에도 다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가 있고 일정 정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보다 더 진정으로 애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모를 하려면 공개를 하는 게 맞아요. 유족을 설득시켜서 공개하고 한자리에 모이고 추모공간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꿈이 어땠는지 어떻게 정말 원통하게 돌아가셨는지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원장대리 이만희 정리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가 않는 거예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말씀……

○이해식 위원 정말 조은희 위원님께 유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만희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해식 위원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공당을 비난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다음은 부산 사상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이상민 장관님, 저는 이상민 장관님과 일을 같이 해 본 사람으로서 이상민 장관님께서 명예와 권력을 좇아서 자리에 연연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대통령당선인께서 이상민 장관께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상민 장관께서 보인 그 표정, 그 엄중함, 그 무거움 제가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며칠 밤을 고뇌하고 잠 못 이루고 대통령께 헌신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상민 장관께서 느꼈을 그 무거움, 책임감, 짓누르는 엄중함, 저는 그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본인을 향해 무겁게 짓누르는 그 책임감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상규명,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사후 대책 잘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참사가 나지 않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든, 토대를 만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가 참사가 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어떤 정부는 국민안전처 만들어서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어떤 정부는 사회적참사위를 만들어서 6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만들고, 역대 대통령들은 재난국가책임제,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사는 또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재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한 엄중한 책임이라는 걸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명심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 같은 국어를 가지고 독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오늘 행안위의 위원님께서 띄운 PPT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행안부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치안 업무가 있지요.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장해야 된다, 그런데 관장할 주체가, 관장할 수단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 보도자료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제3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별도의 항을 만들어 경찰청을 통해 치안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국 시행령의 모법인 정부조직법은 행안부장관의 이런 치안 업무를 책임져라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라고 정부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조직법에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권한을 경찰국을 통해서, 내가 이 시행령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너무 앞뒤 다 자르고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내가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 싹둑 자르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했고요.

장관님, 오늘 이임재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 못 받았다, 나는 모른다’, 명확한 지휘체계의 가장 큰 지휘 책임자인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는 몰랐다’……

윤희근 청장님, 대한민국 경찰이 이 수준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토록 한심합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경찰이 이렇게 됐습니까?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아비규환이고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보고 못 받았다, 몰랐다’……

이번 기회에 경찰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에게 나라의 치안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관할서장이 모르는데 경찰청장인들, 행정안전부장관인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증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끄십시오.

국가에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용산경찰서 현장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개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겁니다. 슬픔도 없는 겁니다. 근조 리본 붙이고 ‘바지 한번 벗자’, 지금의 용산경찰서의 현재이고 민낯입니다. 생일파티 할 시간은 있고, 생일파티 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용산에 대통령실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치안의 문제가 뿔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장제원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산경찰서입니다, 이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찰이 한번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지금 경찰이 완전히 나사가 빠진 겁니다. 서장은 자기 관할 지역에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할 경찰서에서 지금 파티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찰에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배후가 있는가, 관여된 세력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가 이거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출경로입니다. 저는 한 온라인 매체, 시민단체, 일부 종교단체, 어떻게 그분들이 158명의 희생자 명단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모두 찾아다니면서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유출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경찰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배후가 있는지 유출경로가 어떤 건지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재난 대책에 대한 TF를 꾸리고 앞으로 사후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안전뉴딜을 하면 어떨까.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 통학로마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에 위험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리, 철길, 학교 앞 위험도로 이런 안전 인프라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거든요.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곳, 인구밀집지역 여기에 지금 과연 우리가 안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은 기초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3개년 계획, 10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윤석열 정부 내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전한 거리, 우리 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안전뉴딜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거를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가지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에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이게 지휘체계가 치안과 소방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가지고, 이게 지역적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체장에게 이 소방과 경찰의 지휘권을 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지휘를 하고 또 중앙에서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각 도끼리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지휘체계를 이번에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오영환 위원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에 시민 사회단체의 움직임과 여론동향 정보 수집해서 문건 만들려고 했던 거 아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오영환 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경찰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경찰 책임론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 방금 이런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8시 SBS 뉴스에서 보도됐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직접 보진 못했고 이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는 받았 습니다.

○오영환 위원 11월 7일 경찰청 정보국 내부 회의에서 한 총경이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이 걱정하시는 첫 번째가 이거다. 국회협력관 거기하고 대변인실 언론 대응이 생각보다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휴민트를 넓혀야 한다’

실제로 국회협력관 운영실태 파악 이런 정보국 내부 문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이 국회협력관의 운영 인원이라든지 소속 부서,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18일까지 제출하라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사찰로 비치는 걸 우려하는 듯이 ‘논란 소지 없도록 파악을 부탁한다’ 이런 당부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청장님,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눈물들이 쏟아져 내릴 때 경찰은 경찰청, 경찰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 때문에 국회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정확한 내용을 제가 사실 아직……

○오영환 위원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보국 문건 즉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언론 보도된 사안인데 제출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그런 보도가 있다는 정도만 지금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영환 위원 청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안 그래도 지금 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 정말 분노와 의혹이 큰 상황에서 정말 자격 없어지시는 겁니다.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문건 형태로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영환 위원 보도 내용 한번 확인하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리고 특수본에서 14일에 행안 부장관이 경찰 상황조치의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지요. 또 오늘은 이상민 장관께서 경찰지휘뿐이 아니라 재난관리에도 직접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피의자 전환했다는 데 맞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도 사실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보도 정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특수본 수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데 옆에 앉아 계세요. 청장님은 어떻습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경찰의 최고 지휘권자로서 경찰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번 참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 맞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아직은 수사 대상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하긴 했습니다.

○오영환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158명이 생명을 잃고 그런 상황인데 재난관리 주무장관이 책임이 있는지 꼭 법리를 검토하고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하는, 이미 참사가 발생한 지 3주가 다 됐는데. 또 경찰의 현장대응,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징후가 담긴 정보보고서 삭제, 묵살 이런 지시한 정황 속에서 서울청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청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현직 장관과

경찰청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특수본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걸 의아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현재 법체계 안에서 그래도 제일 그나마 공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환 위원**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용산소방서장까지 이미 입건하고 압수수색 한창 진행됐지요.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하세월하고 책임도 아무도 지지 않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경찰관, 구급대원 이런 분들은 위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결국 자기들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까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용산서 정보계장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분, 지금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야 되는 건 정말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어떤 국민들이 이걸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지휘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런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해야 되는 의무들, 구체적인 역할들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원칙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특수본에서 당연히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제대로 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무한책임, 무한책임’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그 두 분께서도 무한책임을 느끼시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위원장대리 이만희** 정리 부탁드립니다.

○**오영환 위원** 조사와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주 북구를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질의 지켜보시면서 국민들께서 참 답답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모두들 입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대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행안부장관도. 정말 답답한데요.

장관님, 이번 이태원 참사,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재난입니다.

○**이형석 위원** 재난이지요? 재난안전법 제3조 사회재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

○**이형석 위원** 좋습니다.

소방청장님.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이형석 위원** 아까 제가 행안부장관에게 본질의 때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소방공무원 노조에서 지난 14일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소방청의 지휘 감독은 어디서 받고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소방청은 행안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받고 있지요. 소방청의 주무장관은 행안부장관이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런데 이 행안부장관을 지금 소방공무원 노조가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고발했다고 생각하세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그 점에 대해서는 소방의 총책임자로서 정말 안타깝고 지금 제 마음은 사실은 엄청 무겁습니다.

○**이형석 위원** 아니, 왜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을 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 안 하셨어요, 왜 고발했는지?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조에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에 대해서 왁자지껄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 청장님,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현장이 대단히 참혹했습니다. 이

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정말 혼자 고군분투했지요. 그러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1단계 발령하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손을 벌벌벌 떨면서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현장 통제를 위해서 경찰력 부족하다고 대대적인 투입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초동대응 그리고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의 대응, 이게 지휘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제 입장에서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래도 그 당시 상황에서 용산소방서장이 그 나름대로의 자기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그나마 국가가, 정부가 작동했던 것은 그 현장에서 대응했던 소방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 서장이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구급 처치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지시를 못 했다, 그리고 2단계 발령 권한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입건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형석 위원 소방관의 수장으로서 이 입건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그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 저는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서 일선의 소방관들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일선 경찰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면서 꼬리를 자르려는 이 정부의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일들을 획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말 진정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것이 다시 이 이태원 참사를 막는,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속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만 국가가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 제발 지휘부에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장관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 논란을 장관님이 어떻게 보시냐 말고요 이 논란 속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 입장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혜인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용혜인 위원 당연히 조심스러우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희생자만 158명인데요. 유족은 훨씬 몇 배가 되는데요. 그분들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마저 질의드릴게요.

한동훈 장관, 한덕수 총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명단 공개되자마자 촌평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명단 공개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구가 있기도 하고 논란이 있기도 하고 반대가 있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뒷집이나 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실 이 갈등을 정부가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족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했다, 몇 명이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도 나왔는데, 의견 수렴하고 계세요?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한 분, 한 분한테 연락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다 라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정부가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명단 공개가 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길 바랐다는 듯이 갈등을 조장하고 혼평이나 하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질의 끝나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가 유가족들 접근하는 것조차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말을 핑계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옹혜인 위원** 저희 의원실에도 유가족분들이 연락 주세요. 어떻게든 이 슬픔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고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한데 그 통로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정책 참고자료 만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 갈등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시민 단체들에 대한 이런 정보 모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공 갈등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시민 단체들 사찰도 하는데 정부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명단 공개가 문제다, 조심스럽다’ 같은 유체이탈 말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했었어야 됐더라는 부분이 있어야 실제로 유가족들을 위한 무언가가 집행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장관님,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습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그리고 유가족과 함께 국가가 이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옹혜인 위원** 국가애도기간 동안 국민들이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추모해야 될지 알아야 하

지 않겠냐, 정부가 먼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꼭 명단 공개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대통령께 건의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끝나면 말씀드릴까요?

○**옹혜인 위원** 이따가 꼭 자세하게 답변 주세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누누이 행정안전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지난번 현안질의 때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재난 위기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께서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사참위 재난 및 피해지원 관련 권고 중에 열한 번째 권고사항, 추모와 관련한 권고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보신 적 있으세요, 사참위 보고서? 직접 보신 적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직접 본 건 없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사항조차도 참사 후 며칠이 지났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걸 지금 국회에 와서 당당하게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왜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고 보고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신 겁니까?

사참위는요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공식 기구입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나머지 질의는 보충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장관님, 아까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김교홍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유족들에게는 저희가 어떤 격식이나 나름의 방법을 갖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만희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하나는 유족들이 과연 정부에 대해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맨 처음에는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뵙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족들께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능한 수단이 사망하신 분, 희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대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담당자들을 통해서 유족분들의 진정한 뜻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겠다 싶어서 그것을 저희가 차츰차츰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려서 언제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그걸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용 위원님 말씀하신 추모공원 문제라든지 그 밖에 정부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출신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 위원** 행안부장관님, 일각에서는 전교조 명단 공개하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웅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분들한테 본인 명단 공개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일을 해야 합니까? 안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웅 위원** 왜요? 이렇게 사회적 혼란이 있는데 왜 이거 물어봐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요 이런 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이분들한테 공개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그런 매우 안 좋은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똑바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웅 위원** 경찰청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괜찮습니다.

○**김웅 위원** 오늘 이임재 증인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에 수차례 기동대 투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이거 사실관계 확인됐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임재 총경은 특수본에 아직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 경찰의 정보 수집 목적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김웅 위원** 그래서 정보활동의 범위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SBS 8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못 봤습니다.

○**김웅 위원** 헬러원 참사 이틀 후에 정보경찰에서 정책 참고자료 이런 거 만들어서, 참사 관련해서 주요 단체 동향을 탐문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건 전해 들었습니다.

○**김웅 위원** 그 이후에 112 신고 녹취록 관련해서, 이 녹취록이 풀리기 전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녹취록 관련해서 언론과 주요 관계자들의 반응을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경직법상의 정보 경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청장하고 정보국 지휘자가 모여서 더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한다고 나오는데, 국회협력관 활동을 강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회협력관 운영실태 파악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정부 각 부처나 공공기관의 IO들, 협력관들의 인원, 부서, 활동, 예산, 이들의 대우, 요직인지 여부, 그 이후의 보직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들의 업무 능력, 전체적인 평가, 보좌진들 사이의 평판 이런 것까지 다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국민의 안전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경직법상 분명 위법한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웅 위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헬러원 참사가 터졌는데 여기저기 모든 것들이 지금 정말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보활동이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맞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경찰의 조직 수호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의문스럽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계실 때 정보경찰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반적인 선진국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확립하는 데 장관님이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제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나 능력 범위, 권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웅 위원 경찰청장님, 국회협력관 활동을 강화하라라는 지시 한 적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그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지 않습니다.

○김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장님하고 상관없이 이런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김웅 위원 이런 지시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

면 정당한 것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일단 한번 구체적인 그 내용과 경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갑 출신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장관님, 많이 힘드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괜찮습니다.

○조응천 위원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10·29 참사 후 2주 만에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용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경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 감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을 보시면,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면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같은 걸 명시하고 제도상 미비점 개선·보완한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뭐가 풀리는지.

그다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대통령 경호법 제15조에 의하면 경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른 기관에다가 파견 혹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휘하는 게 파견·협조 요청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지금 처음 봐가지고요 즉답하기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래도 저나 장관님이나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는 있으니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일응.

이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왔을 거고요. 또 국무회의에 가서 말씀하셔야 될 건데, 이거 잘 좀 살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조응천 위원 경찰청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괜찮습니다.

○조응천 위원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조응천 위원 지금도 VIP 경호 관련해서는 말이 협조지 사실상 지휘를 받고 있지요. 명실상부하게 하는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경호법에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법은 안 그래도. 그렇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10·29 참사 2주 후에 지금 이런 것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래도 집회·시위 막느라고 경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 돼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국민적 비난이,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참 공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 쪽에 의견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 이미 내셨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조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관님 또 청장님에 대해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장관님의 ‘누군들 품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계셨습니다. 저는 장관님 심정 이해합니다. 정말 액면 그대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이것 딱 봤을 때.

정말 괴로우시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잖아요. 장관님의 권한이 뭐니까? 재난안전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제가 또 법을 좀 봐야 되겠네.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시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시잖아요. 이런 권한을 행사하시니까 이런 큰 재난이 터졌을 때는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조응천 위원 또한 헌법 제87조에 의하면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고 수시로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직인 국무위원이 대속하는 거지요. 권한을, 국정을 보좌하는 만큼 또 정부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래서 역대 대형 재난사고·인명사고 때는 국무위원의 자진 사퇴, 사의 표명, 경질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해 페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한총련, 연평도 포격 사건, 최근의 세월호 참사까지.

이런 전례가 있는데 이게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선후가 분명하신 장관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공허하고 괴로운 거지요.

소방노조 고발로 피의자까지 되시고, 뭘 영화를 누리려고 피의자까지 되시느냐.

저는 정말 솔직히 여쭙고 싶어요, 사표 던지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 표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리할지 말지는 대통령께 미루십시오. 공을 대통령에게 넘기십시오. 그게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 보좌하는 국무위원의 도리를 다하고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입니다.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조응천 위원 지금까지 장관님께 드린 말 대부분 인용합니다.

경찰법 제14조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청장님의 직무입니다. 권한이 크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맞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만큼 책임이 큼니다. 역시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지 않으니까 지금 힘드신 겁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거고요.

세계적으로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후진국 수준으로 치안이 떨어지는 비극을 목도하고 이는 또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준군사조직인 경찰의 지휘·보고 체계가 종횡으로 모두 무너진 그런 정말 처참한 현상……

청장님이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에 청장님 부하들이 현미경으로 행위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선 경찰의 분노를 달래고 경찰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청장님.

직업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건 직과 업이 결합된 말입니다. 직은 타이틀이고 명함입니다. 업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이고 하늘이 내린 사명입니다. 업으로 가면 직을 얻고 직으로 가면 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제발 업으로 가십시오. 직을 고수하면 안 됩니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이라면 직을 갖고 어떤 업을 이루려고 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한처럼 공허한 게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익 조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지만 정말 가슴을 때리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참사의 수습은 있을 수 없다. 웃음이, 희망이 사라진 가족에게 어떻게 다시 웃음을,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수습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하는 변명일 것이다’ 이런 위딩을 모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참고자료를 실어 봤더라고요. 2010년도에 대한민국정부에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장관 직무가이드’라는 책을 낸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중에 인용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 가지 죽 있습니다만 ‘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법적인 책임의 범위를 초월해 무한정의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자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부하 직원이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중국에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공감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인사청문회 때, 한 6개월 전인가요. 장관님, 훌륭하신 분이요 하는 여러 가지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 중에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기억합니다.

○임호선 위원 안보재난관리학과 1학기 과정을 마치고 일곱 차례 휴학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나마 재난·안보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학기라도 하셨으니 참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관심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때 저희가 서면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서면질의에 장관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재난 양상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복구뿐 아니라 재난의 사전적 예방과 대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정착되도록 국민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에도 주력해 나가겠다, 특히 재난에서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출석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어땠습니까? 거짓해명, 자료 은폐를 일관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서면질의에 답변하셨던 자치단체장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적반하장도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거짓해명, 자료 은폐……

당일 구청장이 22시 59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시했지만 2분간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4시 30분에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산구청장 탄원서 받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관으로서 경찰청을 지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자치단체, 기본이 안 돼 있는 여기부터 제대로 장관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장관님, 예결위에서 장관님의 책임 문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예결위 질의 답변 자료 소상히 봤습니다.

이제는요 앞서 제가 인용했던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책임을 고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민을 달래는, 국민의 아픈 가

숨을 달래는 장관님의 가장 진솔하시고 솔직하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충심으로 건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 이채익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봉민 위원 전봉민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 좀 전에 증인들 대답하는 것 보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봤습니다.

○전봉민 위원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두 분 다.

그리고 류미진 상황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한 번도 순시를 하지 않았다, 이게 관례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례는…… 실질적으로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방이 있으면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틈틈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라든지 점심식사 시간이라든지 충분히 가서 순시를 하는 게 그것이 저는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님 지적 동의합니다.

○전봉민 위원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황실에서는 상황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대로 애도기간 중에도 해당 경찰서에서, 용산경찰서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전봉민 위원 맞지요. 기강, 관심, 배려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한 분의 관심만 조금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자 명단은 지금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봉민 위원 예.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는 희생자를 신원 확인을 통해서 파악을 했던 건 맞고요.

○전봉민 위원 현재 이것을 누구 누구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청하고……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알기로 아마 서울시라든지 중대본이라든지 여기가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전봉민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명단 관리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유가족들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자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봉민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야당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한 사항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2차 피해예요. 결국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는 관련 기관에 그 자료를 아마 공유를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대본이나 서울시 같은 데에.

○전봉민 위원 하여튼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현재 유가족들하고, 아까 소통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생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대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봉민 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을 일선 행정하듯이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정부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말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봉민 위원** 전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전혀 아닙니다.

○**전봉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가족들과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장관님께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통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십니다, 아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봉민 위원** 아마 많이 힘들어 안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잘 생각하셔서 소통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전봉민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원님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셔야 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인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행안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더라도 저는 장관께서 물러나시는 게 장관의 헌법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인권이 생명권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번에 그 책무를 국가는 다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에 국가 등의 책무가 있고요. 또 6조에는 행안부장관이 그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됩니다. 물론 이때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가벼울 때는 헌법 87조에 해임 조항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벼울 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진사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관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지금 장관께서 물러나시는 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장관의 헌법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 7년여 동안 여러 차례 조사와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 조사와 수사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유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달래주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됐다고 평가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지 구조적 원인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참사에 관련한 조사와 수사의 실패 원인이 사법적 조치, 즉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조치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조치가 출발에서부터 강조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럴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더더욱 세월호 참사는 정부 책임, 최상층부에서 회피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관께서도 어찌 됐건 고발당해서 피의자 신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우려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꼭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청장 직무대리께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산서장이 입건되셨어요. 그에 관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아직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아마 지금 용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에서 한 분의 국민이라도 살리기 위해 애썼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번 입건은 너무 서두른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재난정책은 예방이 90%고 대응은 10% 정도인데 대응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현장의 상황은 지휘관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한데 혹여 사소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형사 책임의 관점에서 입건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게 평가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박한 경우에 책임을 감면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 관련한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도 우리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5에 있는 특별규정을 감안한다면 입건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고, 책임 조각사유, 결국 또 재판까지 가더라도 형벌이 감면·감경일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리 서둘러서 입건을 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사실 특수본 수사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민의힘 여

당 위원께서 ‘행안부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도 많이 하는 데 비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안 움직인다’라고 지적하자 장관께서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의 영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태원 참사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하는 민주당, 야당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은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 상황이고 사고가 난 이후부터는 재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제가 치안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맞습니다.

○천준호 위원 장관님의 말씀은 안전사고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행안부가 책임지지만 발생 전까지는 치안의 영역으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경찰청장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안전사고나 사회재난이 발생 후에는 행안부장관의 책임이지만 발생 전까지는 치안 영역으로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장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근거를 하면 사실은 그런 재난 예방은 국가, 자치단체로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도 저희 경찰은 긴급구조의 지원기관입니다. 법 규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청장으로서……

○천준호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데요. 장관님만 모르고 계셔서 제가 장관님께 법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 행안부장관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사무를 관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안부장관이 총괄·조정·관장한다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정책 사무가 재난이 발생된 뒤 구조·수습에 관한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예방 업무, 사전 대피나 준비가 행안부의 업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고 발생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행안부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천준호 위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확인하셨고, 제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도 그렇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행안부 업무 범위에는 이미 재난 예방까지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25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예방에 관한 사전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뿐이지 경찰청이나 경찰 조직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재난안전법 제36조에 보면 재난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행안부장관이 재난지역 선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책무가 행안부장관의 중요한 업무다라고 하는 것을 재난안전 기본법 곳곳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천준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벌어진 이번 일과 같은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이 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전에?

○**천준호 위원** 아니, 이번 일과 같은,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장관으로 임명되신 다음에 하신 업무가 있으시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많이 있지요.

○**천준호 위원** 사전 대비책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이 충분히 마련하게끔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이 행안부의 기본 역할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흔적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찾아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천준호 위원** 재난을 사고라고 부르고 또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 영역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경찰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런 행안부장관으로서의 태도가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법적 책무, 예방의 책임마저 부인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수사든 아니면 원인 분석이든 대책 마련이든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각 기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사실은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는 최고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지기가 참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직 전체가 나중에 긴장을 갖고 재난 예비에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법적 책임 이외에 정치적·결과적 책임을 지고 나서야만 사실은 그 뒤에 그 조직이 재난에 대한 대비와 긴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장관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기소되는 사람만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결과의 책임,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파면되셔야 될 상황인데 이미 여기까지 왔고, 지금이야말로 자진사퇴를 해야 하고 자진사퇴야말로 이 사태 수습의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께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용산서 정보계장님이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헬러원 축제 위험 보고서를 삭제하고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런데 나에게 몰아가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이 이태원 헬러원 축제 위험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용산서의 위험 보고서는 용산서에서 작성이 되었고 서울경찰청 정보과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그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래서 접수까지 부여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서에서 그런 위험 판단에 기초해서 수차례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장은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실에 대한 경비를 강조했고 마약 단속 강화를 지시한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위험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책, 책임 추궁을 두려워해서 아마 그것을 삭제 지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재난관리, 안전의 전체 책임을 지고 계시는 행정안전부장관부터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이 사건에 직접적 지휘 책임이 있는,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장이 사퇴를 하고 해임이 되셨다면 사실은 그 문건을 삭제하라고 하는 지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안타까운 용산서 정보계장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현직에 이렇게 멀쩡하게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딘가는 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경찰청장님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님, 이 세 분은 지금 즉시 사퇴를 하시거나 직무에서 배제가 되셔야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말씀 주신 용산서 전 정보계장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조직의 수장으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위원님 뵈는 기억이 나는데 가족들이 30여년 살아온 공직생활이 헛되이 평가되지 않도록

해 달라 했던 그 부탁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끝까지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준호 위원** 서울청장 업무 배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경찰청장 윤희근** 글썽요, 그것은 사실은 저의 인사권한 범위는 벗어나거든요.

○**천준호 위원** 아니면 대통령께 건의라도 하셔야지요. 건의라도 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아니,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지금 경찰조직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아마 걱정한 타이밍에 조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천준호 위원** 장관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 새겨들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예방 업무가 장관의 업무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장관 업무입니다.

○**천준호 위원** 치안 업무는 그러면 경찰의 업무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치안은 당연히 경찰의 업무지요.

○**천준호 위원** 그러면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것은 치안의 책임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6시 반경부터 112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부터 사고 발생까지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천준호 위원** 당시 질문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이채익**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오늘 질의 현장 관련해서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씩 물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결위 말씀 중에 지금 특수본 수사가 현장에 있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장관님 의견을 물으셨는데 아마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당일 참사 현장에 계셨던, 그리고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이지 형사처벌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30년 넘게 법조인 생활을 해 보면서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임재했던 분들에 대해서, 거기로부터 진상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특수본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거기서 언론보도를 보면 정말 목이 터져라 일한 경찰관, 온몸을 던져서 헌신한 소방관들이 있는데 특수본이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과연 이분들을 다 하나하나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정말 책임져야 될 분이 있으면 특수본에서 잘 가려낼 거라고 봅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향후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안을 대하는 진정성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실 지키느라고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다, 마약 단속하느라고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세요. 정말 저는 무슨, 어떤 논리적인 사항으로 저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시간의 문제였지 이 사고 아마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경찰청장님도 한자리에 계시지만 모든 기본이 무너졌어요. 그 참사 현장에 경찰 지휘관급, 정정급 이상 과장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네 명이. 그 물리는 골목을 조금만 길을 막고 퇴워서 끌어내면 그것 지킬 수 있는, 그 참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경찰서장한테 전화보고·무전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얘기 안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나오신 류미진 증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당직실 비우고도 이것을 관행이라

고 얘기하세요. 이게 어떻게 경찰 지휘관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용산구청을 갔습니다. 구청장 계시고 부구청장 계시고 아홉 명의 국장급들이 있어요. 단 한 번도 헬러원 관련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나가신 분이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모든 것의 기본적인, 자신들의 본연의 목적, 존재의 목적들에 대한 그것들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사고를 바라보면서 장관님께서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누구를 더 점검해야 되겠는지.

경찰청장님도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사람들, 그런 조직들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에 대해서는 상황실도 설치하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특위에서 거론됐던 사항들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참사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실도 만들고 중간보고 체계도 만들고 다 하자고 서로 의논을 모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의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 공개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추모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정치적 목적,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소리 높여 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수사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당의 관여 정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요. 문자의 공개에서부터 최고위에서 이 대표 발언부터 그 이후의 공개에 이르기까지 마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와 지듯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청장님, 서울청에서 수사를 하신다니까 정말 정확하게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마무리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을까 대안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112 신고와 119 이것을 통합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연 112·119가 연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부는 한번 112 경찰 부분, 119 소방 부분을 통합 관리할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행정과 경찰, 소방 이런 부분의 관계대책회의 이것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빈발할 개연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자신도 단체장을 두 번을 해 봤습니다마는 단체장이 경찰에 대해서 협조하기가 또 협조 요청을 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 경찰, 소방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정례화할 수 있는 이것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정보 기능의 실패다. 정보 기능, 사전에 이런 예측을 하지 못한 총체적인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형사고나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보강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인공지능이나 지능형 폐쇄회로 CCTV, 드론 등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서울시 재난상황실에 2만 9000대의 CCTV가 구축이 되어 있다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산구 내의 CCTV와 연결,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와 용산구하고도 제대로 이런 기능이 연동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하나, 이번에도 이태원 1번 출구 쪽에 집중적인 인파가 몰렸는데 무정차 결정 이런 부분이, 서울시도 또 서울교통공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 용산구청도 서울시에 요청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이게 꼭

서울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김용판 위원님이 하셨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에 저는 매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자치경찰이 도대체 뭐를 하는지, 그 많은 인력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치경찰이 도대체 뭐를 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치경찰을 한다는 정치 구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에게 임무를 주고 또 자치단체와 확실하게 이 협력·협조 관계, 지휘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부분은 차후에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민선 자치의회에…… 제가 지난번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너무 무기력하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전부 다 요즘 불법 건축물에 강제 이행금만 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강제집행 이런 것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한 정부의 방침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가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경찰 그다음에 소방…… 방금 전에 차장님께서 소방 지휘 감독을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자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 자치단체장이 과연 소방과 경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경찰은 지금 사실 자치경찰제가 여기서 많이 논의됐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저희와 경찰과 소방이 정말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CCTV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법안까지 만들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민선 자치도 예산국회에서도 지적된 게 불법 건축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행하고 있는 주차 단속 이것도 경찰로 돌려야 된다, 그 이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이 이런 사고의 직간접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에 제가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차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좌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경찰청장께서는 답변하실 부분 없으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장관님께서 다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여덟 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저희가 지금 아마 범정부 TF 그다음에 우리 경찰 자체 대책 TF 안에서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알겠습니다.

소방청장 대행은 하실 말씀 없어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저희 소방청에서도 이번에 사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재보충질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채익 예,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간사님들 간에 좀 전에 합의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채익 예.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들이 이번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이번 이 사건은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흔든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경찰 공무원, 의료진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참으로 많은 질의에 또 많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정기회가 계속되는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취재와 중계를 위해 고생해 주신 국회방송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 교 홍	김 용 판	김 우	김 철 민
문 진 석	박 성 민	송 재 호	오 영 환
용 혜 인	이 만 희	이 성 만	이 채 익
이 해 식	이 형 석	임 호 선	장 제 원
진 봉 민	정 우 택	조 은 희	조 응 천
천 준 호	최 기 상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 규 찬
전 문 위 원	신 문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상 민
인 사 혁 신 처 장	김 승 호
경 찰 청 장	윤 희 근
소 방 청 장 직 무 대 리	남 화 영
진 실 · 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장	정 근 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박 찬 진
---------	-------

○출석 증인

이임재(경찰공무원 총경)
류미진(경찰공무원 총경)